

제429회 국회  
(정기회)

##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4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기획재정부 소관
  - 국가데이터처 소관
  - 국세청 소관
  - 관세청 소관
  - 조달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공공자금관리기금
  - 국유재산관리기금
  - 대외경제협력기금
  - 복권기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외국환평형기금
  - 기후대응기금

### 상정된 안건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2
  - 기획재정부 소관
  - 국가데이터처 소관
  - 국세청 소관
  - 관세청 소관
  - 조달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2
  - 공공자금관리기금
  - 국유재산관리기금
  - 대외경제협력기금
  - 복권기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외국환평형기금

사. 기후대응기금

---

(10시04분 개의)

○소위원장 정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가데이터처 소관

다. 국세청 소관

라. 관세청 소관

마. 조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사. 기후대응기금

○소위원장 정일영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국가데이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소위 자료 58페이지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1번,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입니다.

동 사업은 공자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입 금액을 일시차입 한도를 10조로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 두 번째는 적용 금리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지적, 그다음에 차입기간도 실제 차입기간에 비해 과다하게 산출됐고 그다음에 동 사업의 최근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서 30억을 감액하자는 안, 그다음에 50억 감액안, 그냥 감액하자는 안이 있습

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소요는 원래 세수 여건이나 자금 집행, 신속 집행 등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예비적인 지출 소요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내용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서 30억 원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30억 감액에 대한 안에 대해서 수용, 김태년 위원님 안에 수용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위원님들.

수용했으니까 이것은 다음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차례요, 2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60페이지입니다. 기타정비입니다.

동 사업은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발행량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시켜 예산안이 과다 편성된바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판매대행기관 수수료율이 과다 책정돼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3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그냥 감액하자는 의견,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냥 감액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니까 액수를 정하지 않고 그냥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아, 감액이 필요하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 기본적인 모수를 할 때 저희가 3조 원까지는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3조가 과연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지적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감액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조 원 정도로 감안하면 한 27억 정도 감액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27억 감액에 동의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저희가 54억 그렇게 감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4억이요.

○박성훈 위원 34억 정도 하는데 27억이면 저희가 수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이렇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61페이지입니다. 국고채 이자상환입니다.

동 사업은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재부는 신규 발행

국채에 대한 편성 금리를 3.0%로 산출하고 있으나 최근 조달금리 하락 추세를 고려할 때 2.8%의 금리를 적용해서 4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어제 저희가 논의한 같은 내용의 일환인 공자금 예수기금 상환할 때 금리를 과연 낮출 것이냐 높일 것이냐 고민하다가 전반적인 금리 상황을 감안할 때 3%로 유지하는 것으로 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용돼야 될 것 같아서 3%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원안 유지.

○소위원장 정일영 원안 유지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이 부분은 금리를 건드리는데 이슈인데요, 어제 저희가 3%도 더 올릴 수 있다고 논의를 해서 가지고 3으로 유지하셨거든요. 공자기금에서 나갈 때랑 받을 때랑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제가 볼 때 기재부가 항상 재원을 마련하는 몇 가지 주요 통로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담고 가고 싶어 할 텐데, 그래야지 나중에 필요할 때 여기서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재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들은 밖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금리를 대충 어느 정도로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지가 시장에 미치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합니다. 정부가 내년도에 예상 금리를 얼마로 예상하고 예상 금리 얼마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편성을 했더라는 게 또 시장에 미치는 그런 시그널이 있을 수도 있어 가지고요.

정부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정교하게 금리를 예측한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희가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이리이러한 기준하에서 우리가 금리를 예측했기 때문에 이런 기준금리를 저희가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런 논리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환율이나 금리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노이즈가 되기 때문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현재 11월 달 기준으로 국고채의 각 연물—1년물·3년물·5년물 가중평균을 저희가 발행한 것—가중평균에 보면 이미 3.1%입니다, 현재가. 그런데 금리 사이클이 내년에 어떨 거냐 저희가 대충 이해하는 바가 있으면 이것 미니멈일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계량적으로 말하면 올 스톱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3%를 갖고 왔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른 의견.

박성훈 위원님이 3%로 어제 논의한 것도 있고 차관 설명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어제하고 일관성 있게 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이걸 그렇게 하시지요. 늘 나중에 뒷단에서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비

비 문제하고 국고채 금리 문제는 약간 유연성을 줘야 나중에 그 과정에서 약간 조정 가능하니까 일단 이걸 그냥, 우리 단계에서는 그대로 수용하시고 윗단에서 좀 더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박성훈 위원 이것은 기재부가 삭감 재원으로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그러면 원안대로, 정부안대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4번, 기타기금 예탁입니다.

동 사업은 기후대응기금 예탁 1000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기후기금 예탁분 10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77페이지에 기후대응기금을 논의할 때, 수입·지출 할 때 또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실지…… 지금 바로 이것만, 수입만 논의하실지…… 어떻게 할까요?

○김태년 위원 77쪽 할 때 하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77?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77페이지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을 논의할 때 수입·지출 할 때 수입 파트입니다.

○박성훈 위원 예탁·예수를 이쪽을 감액하고 저쪽을 증액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박성훈 위원 같이 그냥 감액하나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어차피 공자기금에서 그쪽으로 1000억을 보내 주는 건데 보내 주는 사이드하고 받는 사이드 둘 다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예.

○박성훈 위원 수입 쪽에서 보는 걸로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에 62페이지,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관리기금 적정 규모 예산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공용재산취득 사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용재산을 신축·매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사업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공용청사취득 프로그램 또는 통합 청·관사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 공용재산취득사업 집행률이 0%인 내역사업도 161개에 해당하는 등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적정 규모로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면 보통 국유재산기금 집행률이 언제 올라가냐, 3/4분기에 집중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치보다는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부분이 26년 예산하고 직결된 부분이 크지 않다고도 저희는 판단되는 사업 내용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월별 실적 점검을 통해서 집행 독려를 하고 또 내년 예산을 이번에 편성할 때는 특히나 집행을 잘하면 편성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집행과 편성을 인센티브를 연계해서 편성했고 최소한의 소요를 반영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서 감액 없이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김태년 위원 우리가 아무 말 없으면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63페이지,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하고 협소한 법원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있어 법원행정처가 오염토양 정화명령 이행을 위해서 위해성평가 용역이 27년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25년 공사비 예산은 전액 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 25년 공사비 중 5억 1500만 원을 세목 조정해서 위해성평가 용역에 충당 해서 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계상된 위해성평가 용역 5억 1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5억 1500만 원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그러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64페이지, 연번 3입니다.

법무부 기타 청사시설 리모델링입니다.

내역사업인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청사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 이전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미비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리모델링 사업을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감액 2억 2500만 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음, 4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4번은 진성준 의원실에서 철회를 요청해서 이 부분은 철회 요청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소위원장 정일영 둘 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철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에 65페이지,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잠깐만요.

국유재산관리기금 어저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증액에 대해서……

○소위원장 정일영 증액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어저께……

○박홍근 위원 예, 어제 다 같이 봤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다 봤고 혹시 저녁에 보시고 또 의견 있으면 얘기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의견 없으신 거지요? 이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65페이지,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사업진행컨설팅(ODA)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후관리지원은 대개도국차관 지원사업의 완공 이후 시설물, 기자재 등의 개보수 및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상반기 중 집행 가능성이 저조한 미확정 사업 11억 7400만 원의 경우에는 선급금 40%만 반영하고 7억 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7억 500만 원 감액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66페이지입니다.

동 사업 내역사업인 비대면 온라인서비스 사업은 25년 12월 구축 완료 예정인 개발사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것으로 1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 이후 1년간은 무상하자보수 기간이므로 시스템 운영비를 제외한 유지보수 소요는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아 1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1억 중에 저희가 유지보수 부분은 왜냐하면 1년간 무상하자보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만 남긴, 유지보수비 중에 하자보수만 뺀다면 4000만 원을 감액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억 중에 4000만 원만 감액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4000만 원 감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유지보수, 무상하자보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김태년 위원 많이 받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사항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은 개별 국가에 직접 장기·저

리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대의견안은 기재부는 대개도국차관 사업 중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내역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계획이 미정인 사업의 예산편성을 최소화하며 대개도국차관 사업에서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으로 자체변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국회보다는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수정하는 게 좀 적절한 걸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그렇게 하는 걸로.

복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67페이지입니다.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저소득 대학생·청년에게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을 공급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지금 서민금융 지원이 최저신용자에게 집중돼서 상대적으로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지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햇살론 특례보증에 투입되는 복권기금 중 1920억 원을 감액해서 동 감액분을 햇살론 일반보증 사업 지원에 사용하자는 증감액 연계안이고요.

그와 더불어 부대의견도 같은 맥락에서 기재부와 금융위는 햇살론 특례보증 사업에서 감액한 사업비를 햇살론 일반보증 사업을 통한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에 사용한다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같이 보시면요, 현재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를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정리했는데요. 위에는 5개인데 밑으로 3개로 바꾸겠다는 취지고요. 특히 왼쪽에 있는 햇살론뱅크나 근로자햇살론은 이 그룹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렵지만 좀 나은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 재원을 보시면 민간으로 다 바뀌 났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돈을 넣지 않기로 하고.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 그룹인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유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를 다 쓰겠다 그래서 금융위 재원과 복권기금을 쓰겠다고 재편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특례보증의 재원을 다 몰아서 더 마중물을 쓰자는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보증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러니까 사실 민간하고 같이해서 더 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재정을 만약에 다시 특례보증 것을 떼서 일반으로 옮긴다면 이

게 논리가 서로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돈은 특례보증이 좀 더 어려운 분들에 쓰고 일반보증은 민간하고 같이해서 하자, 이게 맞기 때문에 현안, 원안 유지를 부탁을 드리고요.

대신에 부대의견에 있어서는 특례보증을 줄인다 이런 표현보다는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저신용·저소득자·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햇살론 일반보증의 공급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의 취지에 맞춰서 일반보증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합리적으로 생각되네요.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69페이지입니다.

동 사안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부대의견안은 기재부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사례를 참고하여 햇살론 특례보증 사업의 경우 성실상환자에 추가 대출을 제공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보증 제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환 의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특례보증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대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일영 예,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0페이지,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영세상인들의 조속한 생업 복귀 및 지역 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시장 재건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속한 재건 및 생업 복귀를 위하여 건축비 3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원래 처음에 서천군 지원할 때 2개년에 걸쳐서 총 80억 원 그래서 작년에 50억, 내년에 30억 원을 주기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합의가 돼 있었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처음에 80억 원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추가로 달라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박홍근 위원 합의를 했다는 것은 누가 누구랑 합의를 했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게 행안부랑 서천군이랑 해서 그 당시에 화재가 났을 때 80억을 2개년에 해서 주겠다고 해서 작년에 이미 50억을 드렸고 이번에 30억을 넣는 건데 그쪽에서는 현재 사업을 하다 보니 30억이 더 들게 생겼다. 그래서 늘려 달라

이런 취지의 내용인데요. 그렇게까지 다 반영하기가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사항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해서 하면 좋겠지만 재원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지역 형평 등등이 있겠네. 그렇게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잠깐만요, 담당 국장이……

○소위원장 정일영 다른 얘기 할 것 있어요? 똑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이용욱 이게 당초에는 총사업비 400억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국장님, 우리가 정리한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얘기하고 차관님 말씀에, 없으면 하지 마세요.

예, 통과.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원안으로 했으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원안대로 통과.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1페이지입니다. 홍성군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된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의 여가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홍성군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설계비 5억 원을 복권기금에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이 노인복지관 건립이라는 게 보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업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하면 법규와 위반이 돼서……

○소위원장 정일영 안 맞는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뭐 할 수가 없네.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BTL 특별인프라펀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BTL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BTL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지적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BTL 사업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국채이자율 수준에 불과해서 민간자본 유치 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해서 500억 전액 삭감 하자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임이자 위원 지적 사항은 현행법상 산기반 펀드에 출자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출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73페이지 보시면 민간투자법 관련 법무법인 세종의 자문 결과로 볼 때 출자에 대한 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 3호에 의해서 출자 사업을 하는 것은 법에서 위임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법률에 먼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후에 사업

을 추진하는 사유로 이번 26년도 예산안 50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정부가 원안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성과 관련된 지적 사항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요, BTO 대신에 BTL의 경우에는 노후시설 성능 개선 그런 소요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현재 추이를 보면 BTL 한도액도 2024년에는 0.8조 원이었는데 민자적격성 통과 사업이 내년에는 2조 원까지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사업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재정사업으로 할 거나라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본금 출자 정도로 도와주고 나머지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다른 데랑 같이 협업해서 하자는 게 재정 여건도 감안해서 더 낮고 전체적으로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에서 이렇게 하자는 차원이고요. 재정사업 전환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사실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소규모다 보니 대체로 중소 건설기업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출자금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정부가 좀 도와달라 이런 현장의 애로를 듣고 와서 마련했다는 게 저희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법규와 관련된 문제인데 저희도 법률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현행법에 법상으로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맨 마지막 5호에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라고 해서 묶을 열어 놓고 시행령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이라고 해서 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인 근거도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일영 예, 그래요.

○박성훈 위원 혹시 누가 나오셨나요?

○소위원장 정일영 담당 국장.

○박성훈 위원 국장님, 이 BTL 특별인프라펀드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공모형으로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 앞에서……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3호입니다.

○박성훈 위원 3호로 만들어지나요? 그러면 차관님, 앞에서 설명하셨던 민자적격성……

○소위원장 정일영 정확한 속기록을 위해서 마이크 켜고 누군지 얘기하시고.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재정관리국장 박봉용입니다.

○박성훈 위원 앞에서 차관님이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사업 규모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내년도에 지금 BTL 한도에 반영된 게 2조 원입니다.

○박성훈 위원 BTL 한도가 2조 원이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예.

○박성훈 위원 2조 원 중에서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사업 규모는, 통과한 게 ……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통과한 사업이, 적격성조사를 통과해야지 BTL 한도에 반영할 수 있거든요.

○박성훈 위원 그래요. 우리가 BTL 한도를 국회에 제출을 하잖아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거기의 수치가 2조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예,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데 그게 다 민자적격성을 통과한 사업이다? 그런데 그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특별인프라펀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참고로 이 BTL 제도를 제가 안도걸 위원과 둘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인프라펀드도 만들고 지금 만든 그 틀을 만든 거지요. 국회에 보고도 하고 그래서 애정은 있는데 좀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물론 감액을 이야기를 했지만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사실 풍부한 시중의 자금이 좀 이런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산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원안대로 하되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좀 잘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석님도 특별한 것 아니면 지금…… 빨리빨리 하자고.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니까 저희 민투법의 산기반 운영에 대해서 보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공급망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소위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통과시켰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신보나 기보의 경우에도 그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출자가 시행령에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금의 목적이 보증이기 때문에 법에서 보증 말고 출자를 암시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입장에서는 법률유보의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법에서 출자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국회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을 하더라도 부대의견으로 법적인 근거를 갖추라는 그 부대의견이 같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 소위에서도 계속 출자에 대해서 할 때는, 기금에 대해서 할 때는 항상 법을 개정해서 했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가능한 수석님은 보고하고 정부 측 얘기하고 위원님들 결론 내리면 그다음에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자꾸 헛갈려 가지고 안 되겠어요. 어제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부대의견을 필요한 것은 정리를 해서, 어떻게 부대의견을 달아요?

○박홍근 위원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일단은 이게 법의 설치 목적에는 ‘보증하기 위하

여'로 돼 있지만 또 법 안에 용도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용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시행령에 이 출자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데도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출자를 해 왔으니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더 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료하게 기금의 용도에다가 이런 것을 넣든지 아니면 목적에다 넣든지 하는 것이 향후에 논란이 일어나지 않겠다 이 말씀의 취지는 저는 공감하거든요.

○소위원장 정일영 취지는 알아요.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부대의견 문안을 하나 만들어서 향후에 그것은 법안을 하나 발의해 가지고 보완을 하면 되지요.

○김태년 위원 정부도 동의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박홍근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부대의견을 그러면 언제 만들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저희가 만들어서……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소소위에다 맡기지 말고 빨리빨리 만들어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만들어서 점심 시작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바로 주십시오.

7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기타이자상환은 저희가 비공개로 KIC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KIC의 위탁수수료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고받은 사항에 있어서 수석전문위원 의견은 연기금에 비해서 위탁수수료가 한 7, 8배 여기가 기본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기본수수료, 자산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기본수수료는 좀 인하하고 성과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넘어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그런데 부대의견안이 어디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저희가 새로 만들어 가지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 생각에는 수수료율에 대해서 좀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거는 인하하고 이거는 인상하고가 조금 스트릭트(strict)한 면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해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뭐 이런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검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석님 가만히 계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이것 어저께 보고받은 내용이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다 있으실 테니까.

○김태년 위원 지금 수석께서 제시하는 이 부대의견의 취지에는 동의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방향성은 저희가 아닌데요. 수수료를 뭘 인하할지……

- 소위원장 정일영 지금 동의하는데 개편한다 이렇게 단정 지어도 그게 부담스럽다는 얘기지?
- 김태년 위원 사실 맞는 거 아니야? 돈을 많이 벌어 줘야 수수료를……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인센티브를 줌…… 기본수수료는 너무 높아 가지고……
-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수정안……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들은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하여 자산운용 위탁수수료율의 체계 개편을……
- 김태년 위원 아니, 여기서는 기본수수료 인하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담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담고?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니요, 그거를 다 묶을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요.
- 소위원장 정일영 이게 여기서는 부대의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 김태년 위원 이 기본수수료율을 건드리지 않고 성과수수료만……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성과수수료만 올릴 수는 없고……
- 김태년 위원 성과수수료만 올린다고 그것만 지금 언급하겠다는……
- 소위원장 정일영 그게 안 되지.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니요, 저희는 아예 통으로 다 빼고요, 통으로. 그러니까 문구를 보면 앞에 거는 목적을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하여 위탁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앞부분을, 중간에 내용을 없이 하는 게……
- 박성훈 위원 기본하고 성과를 넣지 않고……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가 또 고민을 해 봐야…… 방금 주셨는데, 저희도 방향성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검토는 또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 박홍근 위원 아니, 검토는 하는데 지난번 우리가 내용 논의를 한번 한 바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방향은 하여튼 개편한다, 개편은 필요하다에 다 공감하는 거고요. 다만 기본은 낮추고 성과는 올리자는 게 제 원래 안인데 그렇게 너무 국한시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탄력성을 좀 주셨으면 하는……
- 박홍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편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때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전체가 다 고연봉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업무와 성과에 따라서 이것이 제대로 관리 운영되게끔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향후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그 앞에 수석전문위원님이 잘 정리한 대로 목적에 보면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하여라는 어떤 방향성은 잡아 주셨거든요.
-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은 이렇게 해 보시지요. 방향성은 있고, 제고를 위하여. 그래서 위하여 뭐 이렇게…… 그런데 이게 되게 참 막연한데……
- 박성훈 위원 인하, 인상을 이렇게 못 박는 게 부담스럽다는 내용입니까?
-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우리 실무자랑 검토를 아직 안 해 봐서……
- 박성훈 위원 그러면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율을 재조정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개

편한다.

○소위원장 정일영 개편안은 뭔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그 말을 넣고 싶어 하는 거지?

○김태년 위원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정리를 해 보세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정리를 해서 다시 봅시다.

이 정도 선에서 이것은 마무리하는 걸로.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6페이지입니다. 지금 위탁수수료가 결산심사 때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지금 수수료를 기타이자상환 사업으로 편성하지 말고 지침에 따라서 기금운영비 사업으로 편성을 하라고 기재위에서 시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도 기타이자상환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운영비 사업으로 이관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게 저도 그때 있었는데요. 그 당시 예비 결산심사 때가 사실 예산안이 거의 나가기 직전이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저희가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예산실과 협의한 결과 이것을 여기서 빼서 다른 데로 옮기자는 건데 기금운영비보다는 아예 별도로 한국투자공사 위탁수수료라는 비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바로 넣는 게 오히려 더 투명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좀 제안을 드립니다. 기금운영비보다는 별도 비목을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별도 비목?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래서 위탁수수료라는 항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예 바로 담자는 의미입니다. 위탁수수료만 따로 모아서.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이게 지난 결산심사 때 시정요구가 채택된 사안이었는데 그 채택된 내용을 또 기재부가 임의로 바뀌서 하는 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 지침에는 기금운영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보다 지침에 맞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박성훈 위원 작성 지침.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 기금운영비가 여기 숫자에도 보시면 14억 정도고요. 이 위탁수수료가 3000억이 되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들어가 버리는 상황 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운영비라고 해 놓고 이렇게까지 많이 관리비를 쓰냐,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기금 운영은 기금을 요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박성훈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은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수수료를 빼면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박성훈 위원 그런데 어차피 같은 말인데요, 저희가 지적 사항도 있고 또 지침에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임의로 반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을 저희가 예산실에다가 한번 다시 또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실하고 협의하기로는 별도로 하나 만드는 것까지는 하고 왔거든

요. 그런데 만약에 기금운용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하신다면 추가를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관하는 걸로 하시고 예산실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는 이의를 그때 다시 소소위에서 제출, 제시를 하셔서 가지고 소소위에서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박성훈 위원 그래요, 이것 그냥 보류하고 위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시지요.

○김태년 위원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보류?

○김태년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보류가 뭐예요?

○김태년 위원 소소위에서 한다고.

○박성훈 위원 예결위 소소위에서.

○소위원장 정일영 예결위?

○김태년 위원 아니야……

○박성훈 위원 우리에서?

○김태년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우리 소소위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김태년 위원 아니, 무슨 논의를 해서 와야 된다고 하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기후.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7페이지,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동 수입은 1000억 원 기금 운영을 위해 부족한 부족분을 공자기금으로 차입하는 것입니다. 지적 사항은 기후대응기금은 여유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나 이익잉여금이 양호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므로 기금 예수금 수입 10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공자기금에서 1000억을 이쪽 기후기금으로 주는 거랑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사실 기후대응기금의 수입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수입이 안에 보면 배출권 매각 수입을 잡아 났습니다. 그런데 배출권 매각 수입이라는 게 가격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잡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실천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같이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매각 수입을 많이 잡아 놓고 그게 내년에 수입으로 다시 잡혀 났는데요. 사실 올해 수입도 지금 현재 3400억을 잡아 났는데 현재 1065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도 이 수입이 과연 탄탄할까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이익이 좀 있으니 깎자라는 말씀은 저희가 실제로 내년에 운용할 때 굉장히 타이트하고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저희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현행 유지.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8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해외 탄소감축설비 설치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지원하거나 투자 지원 전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최근 실집행 실적 및 유치국과의 협의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으로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적정 수준?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 당시에 상대국에서 집행이 잘 되겠냐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된 자국 내에서 탄소 배출과 관련된 법제도를 다 완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특별한 의견 없으면 원안.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시설 및 R&D 프로젝트에 투자할 기업에 장기·저리 융자 지원하거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적 사항은 이차보전 사업 중 잔액을 기획평가비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기획평가비로 운영되는 7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 수요에 대응해서 오히려 94억을 증액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8억 1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여기 있는 기획평가비라고 언급된 부분이 이차보전 사업에는 이미 있는데 왜 여기다 또 달았냐 하는데 사실은 이 기획운영비는 이차보전 사업이 아니고 같은 카테고리 내 다른 항목인 탄소중립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의 운영비를 여기다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에 따른 혼선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안 유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뭐 증액도 있고 원안 유지도 있고 다 있는데 원안 유지로 그냥 하시지요.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아까 78페이지.

○소위원장 정일영 78, 돌아가서?

○박성훈 위원 예. 잠깐만요. 이게 보니까 집행 실적이 아까 말씀하신 게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게 상대국의 법령 정비가 안 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집행을 다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료에도 보면 ‘2024년 실집행 이월액 253억은 집행되지 않고 반납 처리될 예정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담당 국장이 줌……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미래전략국장 천재호입니다.

파리협정이 24년 12월에 타결이 되면서 각국에서 그때 이후로 법령 정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베트남하고 우즈베크 등이 올해 6월, 10월 때 법령 정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반기에는 법령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사업 진척이 안 됐는데 하반기에 지금 법령 정비가 다 됐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집행이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되면 지금 금액 잡아 놓은 거는 선수금 20%로만 잡아 놔했습니다. 이게 전체 금액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수금 20%만 해도 지금 계획된 예산액의 한 8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올해도 당초 계획과 달리 수정예산안을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예, 올해는 그래서 법령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나라에서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이 못 나가는 건데 정비가 올해 하반기에 다 됐기 때문에 내년에 나갈 거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자, 이 정도로.

잘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얘기는.

그리고 아까 하다가 돌아갔는데 2번,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3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80페이지입니다. 사업재편지원 기반 구축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재편을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가 43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부터 현재까지 사업재편 승인 유형을 보면 82건 중에 탄소중립 유형은 4건에 불과해서 동 기금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은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은 기후대응기금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동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탄소 저감 효과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도가 명확한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은 기재부는 사업재편지원 기반 구축 사업이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및 공급망 안정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사업임을 고려하면 기후기금 설립·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 회계로의 이관을 검토한다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사업재편에 관련된 것을 지원하는 과정에 기후대응기금의 목적에 맞는 것을 담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집행할 때 실제로 탄소중립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나중에 또 이게 생각과 다르다 했을 때 일반회계에 관 계된 걸 논의를 하지 이번에 벌써 논의하기는 좀 빠르지 않나, 일단 정부가 집행하는 것 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감액은 안 되고 부대의견도……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여기 위원님 말씀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옮기자는 취지의 말씀이거든요.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박성훈 위원 사업재편지원 기반 구축 사업하고 기후대응기금하고 연관성을 찾아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실은 그렇지 않은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관련된 예산으로 차라리 보내 주고 이 용도에 맞게끔만 사업을 좀 간소화시키든 지 정치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보면 앞에서 자료 중에 탄소중립과 관련되는 사업은 5% 미만이다라고 되어 있 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담당 국 장님……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는 이 실적을 보면 결국 탄 소 쪽으로 이동하는 사업을 재편할 때 도와주자는 취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같은 거를 이용하는 재편을 해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탄소중립에 실제 도움이 되느냐 이런 논란은 조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는 많이 할 건데 이게 100%를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집행단계에서 좀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박성훈 위원 저는 일정 부분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향으 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 재원을 싹 발라내야 되는데 실제로 이걸 운영해 봐 야 얼마나 탄소중립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4% 이렇게 할당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발라낼 금액을 현재로서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 다. 그러니까 노력하고 난 다음에 보자라는 차원인데 만약에 부대의견이라도 남기신다면 이관이 아니고 최대한 이런 목적에 쏠라 이렇게 부대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열심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관을 검토한다’인데, 그래도 열심히 검토는 해 봐야겠구먼. 어떻게 해요?

○김태년 위원 그냥 차관…… 수용하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차관 얘기대로?

○김태년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수석님과 여기 열심히들, 열심히 분석했는데.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너무 이게, 이 부분이 5% 미만이기 때문에 좀 페널티로 한 10% 정도 감액을 하셔야지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고 하지 계속 정부안을 유지를 하면 그다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

○박성훈 위원 부처가 이렇게 가져와서 예산실에 돈 달라고 하면 바로 삭감되어야 되는 것……

○소위원장 정일영 다소 이게 확실히 좀 방만하게 운영된 느낌은 드네요, 국장님. 이걸 누가 더 명쾌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탄소중립으로 이렇게 등등 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네.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가능하시면…… 저희가 기후기금 전체 총괄을 하는데 사업은 부처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부처에서 설명을 잠깐 조금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정일영 부처의 누가 왔어요?

○산업통상부기업정책팀장 최수연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 기업정책팀장 최수연이라고 하고요.

산업통상부 기업정책팀장 최수연입니다.

동 사업 저희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10년 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기금에 포함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탄소중립 유형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4개 정도 승인이 되었고, 이 제도는 기업들이 저희에게 사업재편 유형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사업은 공급망이나 산업위기지역에 산업 재편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어서 기금 운영하고는 조금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전처럼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으로 산업부는 의견이 그렇게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이게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이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으로 가겠지. 그렇지만 어떤 게 주요 목적인지 하는 거거든요.

○산업통상부기업정책팀장 최수연 주목적은 사실상 사업재편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에 저희가 집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신사업 재편 중에서 일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 전기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저희……

○소위원장 정일영 이게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으니까.

○산업통상부기업정책팀장 최수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팀장님 얘기대로 하면 기재부가 잘못했네요. 뭔가 손발이 안 맞아요.

○박성훈 위원 이것 소소위에서 논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김태년 위원 이것 지적 사항이 맞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적 사항이 맞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보류해 주시면 다시 또 조금 더 논의해서……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을 소소위에서 한 10%를 감액하고 부대의견을 달든지.

○김태년 위원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가져오세요. 부처별로 지금 다르잖아, 의견이.

○박홍근 위원 이 유형이 따로, 지금 전체 6개라는 거잖아요, 그 6개 중에서 작년부터 탄소중립 부분이 들어온 거고?

○산업통상부기업정책팀장 최수연 예, 맞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이게 딱 무조건 한 유형이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산업통상부기업정책팀장 최수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재편을 원하는 기

업들이 저희 쪽에 신청을 하면 그 유형에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일반회계냐 기금이나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산업통상부기업정책팀장 최수연 저희가 탄소중립을 아무리 많이 하고 싶어도 기업들이 그렇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회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사업 재편……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실질화, 효율화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지 예산 규모나 또는 이걸 어느 회계에다 둘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상의하시지요. 보류.

○소위원장 정일영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이거는 소소위에서……

○박성훈 위원 정부 입장 정리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소소위에서 논의를……

○소위원장 정일영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81페이지, 동 사업에 대해서 증액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동 사업에 있어서 호남권과 대경권에 현장 밀착형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서 현장 지원 센터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증액이네요.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정해 주시면……

○소위원장 정일영 왜 목소리에 자신이 없어, 확실히 말씀하세요.

증액 동의라는 뜻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증액해 주시는 거에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왜 정부 측에 혼선이 자꾸……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이것도 같은 사업이니까 같이 보류해 가지고 하시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자신이 없어 정부가.

다시 정리해서 그러면 재논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일단 그것도 보류하시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예, 보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82페이지입니다.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하여 성장 잠재력이 있는 미래환경·녹색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민간 녹색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지적 사항은 기 조성 펀드의 잔존 투자금을 고려할 때 정부 출자금 증액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300억 감액의견, 135억 감액의

견.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기재부는 미래환경산업펀드 사업의 예산을 실제 투자기간 내 편드에 분할납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이게 분할납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운영할 때 굉장히 적시 투자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액을 다 원안대로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전액, 감액 없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감액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전액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원안 정부안으로……

○소위원장 정일영 부대의견도 없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부대의견 자체가 분할납입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분할납입하면 그 한도에 딱 막혀 버립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감액도 안 되고 부대의견도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다 같은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실제 투자율도 50%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이미 조성된 펀드의 투자금액도 277억이 남아 있고 또 미집행 투자여력도 1800억 정도의 수준이고 이들 돈을 활용해서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담아 갈 필요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 윤태근 기후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어디요?

○기후에너지환경부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 윤태근 기후부입니다.

미래환경펀드 담당 과장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집행률이 낮다는 부분은 펀드가 조성이 되면 4개년에 걸쳐서 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앞으로 투자기간이 남아 있어서 남아 있는 거지, 이게 연내에 집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조성이 되면 앞으로 4년간 집행이 되고 그런 구조라서 이게 미집행 투자여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집행된 것 2017년부터 확인해 보니까 수도권이 한 45% 정도 되고요, 지방 기업에 투자된 비율이 한 55% 정도 됩니다. 대구, 부산을 비롯해서 저희가 한 55% 정도는 지역기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역의 영세기업들이 자금 접근성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현행 규모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성훈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기 조성 펀드의 잔존 투자금과 관련

해 가지고 2022년 말까지 1호 펀드가 청산하기로 했었지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 윤태근 예,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 펀드 200억 원이 2017년에 조성됐던 게 지금 정산된 거는 122억 원이 정산이 돼서 다시 회수가 돼서 재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거는 정산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00억 원이 지금 현재 회수돼서 남아 있는 구조가 아니고 이미 회수돼서 이전 연도에 재투자 과정에 펀드 조성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재투자가 되지 않은 남은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 윤태근 1호 펀드 200억 원은 122억 원이 2022년부터 회수가 돼서 다 재투자가 됐고요. 나머지 금액은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 투자자가 30%를 출자하는 구조라 수익을 다 정산을 하고 그게 다시 회수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더 특별히 의견 없으시면 차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은 분할납입은 조금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건물 부문의 저탄소 전환 및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를 위해서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의무화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적 사항은 태양광을 주로 설치하는 사업 성격상 중국산 사용 등이 우려되고 비용 절감 효과도 저조하다고 지적을 했고 이와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동 사업 2012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의견은 당초 NDC 기본계획에 따른 지원물량보다 26년도에 지원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5년 예산안 편성 당시 물량으로 조정을 하면 388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최대한 국산 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NDC 관련된 것은 사실은 원래 목표보다도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기재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됐다, 그래서 더 하겠다는 걸 굳이 줄여서까지 감액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이거는 별도로 검토보고서 없이 나왔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감액 이인선 위원님이 엄청 많이……

○박성훈 위원 이인선 위원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첫 번째는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을 이렇게 항목만 이름만 바꿔 가지고 택같이 해서 가져온 거를 지적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중국산이 이렇게 거의 99%가 넘는 태양광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라도 중국산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제도적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면 일정 부분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NDC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더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삭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합리적인 논리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원물량이나 이런,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 시설개선 위주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포장만 이렇게 바뀌어서 또는 신규 항목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강좌라든지 이렇게 불필요한 용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국토부 누가 왔나요?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 홍성준** 예,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홍성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희 부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태양광 패널을 구성하는 소재는 중국산이 많은데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도 많고 또 그 외에 단열이라든가 냉난방, 환기 같은 그런 기술 요소들은 대부분 국산화되어 있고요. 일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태양광 싫어’ 그래서 태양광 설치하지 않는 건물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35 NDC에 히트펌프를 적극 활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국내 업체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앞서서 기재부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는 국내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그린리모델링이 원금 회수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기대 효과의 일부분인 전기료가 절감된 효과만 반영된 거고 사실은 탄소 감축 효과를 비용으로 환산하고, 이게 저희가 가 보면 고쳐진 리모델링 건물에 국민들이 많이 모여서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혹한이나 혹서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인프라가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다 소규모 지역 업체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원금 회수 기간은 훨씬 짧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자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796동이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68동밖에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높고 집행률도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이게 지역에 가 보면 가장 예산 빼먹기 좋은 사업으로서 업자들이 홍보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효과성 검증이라든지 집행 실적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 보고 예산을 요청을 하셔야지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집행이 되고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나 근거 없이 이렇게 예산을 덜컥 요청을, 그것도 기존에 있던 사업 이름만 바꿔 가지고 가져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또 재정의 규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정 부분 저희가 통제를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박홍근 위원 우선 이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출 구조조정의 문제는 저희가 지난 번에 한번 이 부분을 다루었던 것 아닙니까, 어제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향후에 지출 구조조정의 어떤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국회에 제대로 보고를 하면서 그런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정부가 NDC 2035를 정의를 하면서 사실 건축 분야에서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목표치가 당연히 상향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공공 분야의 건축 건물들이 선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의 요구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지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런 게 보통은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 홍성준 예, 맞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 거고.

우려도 중국산 값싼 태양광 패널을 쓰는 것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어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국산이나…… 비용이 올라가서 문제일 텐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을 잘, 설계와 시행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 홍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이 분야는 하여튼 기존부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들이, 지금 노후화된 건물들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 홍성준 맞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빨리 그것을 바꿔 주는 것은 국가경제 문제에서나 시대 흐름에 부합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우려 사항들을 잘 보완해 주시고 그래서 사업 집행의 효율성 부분을 좀 더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해 드려서, 현장의 수요와 실제 집행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 홍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과장님, 중국산 점유율, 이 자료의 99.6%는 틀리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 홍성준 그러니까 처음 태양광만 보급한, 태양광은 중국산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전부 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은 아니고 오히려 단열이라든가 냉난……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태양광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예요?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 홍성준 수치적으로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 논리를, 대략……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박홍근 위원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건물별로 다 이게, 도서관에 있다가 경로당에 있

다가……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도 있겠지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 홍성준 취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 끝나면 나가셔서 그 자료하고 작년이나 올해 이것 어느 어느 사업들에 얼마큼 집행됐는지 원래 계획 대비 집행률을 한번 자료를 쥐 보시고.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장 홍성준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리고 기재부하고 같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언뜻 보면 기후대응기금을 여러 부처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아까 무슨 기후부, 산업부, 국토부…… 그런데 그 부에서 어디 어디에 어떤 사업에 얼마큼 집행하겠다고 기재부에 보고인가 통보인가 하면 기재부는 보통 그냥 오케이 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니요, 심의를……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견제 장치가 일반예산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쓰는 것들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예산 같으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10억만 쓰려고 해도. 그런데 기금은 부에서 그냥 쓰면 기재부에서는 거의 체크를 안 하는가 싶고 부는 또 일반예산보다는 좀 느슨하게, 좀 방만하게 집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니요, 그렇지는…… 제가 잘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금의 수입이 타이트하기 때문이에요 마음대로 넣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또 그것도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고……

○소위원장 정일영 집행 내역, 사업 내역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 걸 다 보고 집행이 부진한지 보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기후기금은 기후의 용도에 맞춰 쓰라는 또 다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정일영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후기금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을 갖고 계속 기후와 무관한 걸 다 쫓아내고 기후를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하고 있어요, 국장님?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끝나면 예산실에 서 다시……

○소위원장 정일영 켜고, 목소리가 크긴 하네.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저희가 일차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문적이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긴 한데 저희가 일차를 하고 어차피 예산실에 가서 예산실이 또 합니다.

저희가 부 안에 같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일반 부처가 되는 거고 예산실이 심의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거르기 때문에 일반회계나 다른 타 회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프로세스가.

○소위원장 정일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오케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내역을 주시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일단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84페이지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준공 후 30여 년이 지나 노후화와 에너지 효율 저하가 심각한 사  
우동 행정복지센터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해 사업 7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지금 이미 논의했었지만 이 사업은 지원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공모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정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  
다. 그리고 특히 증축 자체는 여기 해당 내용이 없는데 여기 증축이 있는 부분이라 이것  
은 현재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별말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85페이지입니다. 산업은행 출자 부분입니다.

동 사업은 탄소중립 핵심 기반 분야의 조기 구축을 위해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정책금  
융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적 사항은 해상풍력, 수소인프라 등 대규모 사업으로 대기업·대형펀드와 연계되어  
있어 정부가 1200억 원, 66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사업 추진 여부를 좌우하지 않을 것  
으로 보이므로 사업비 560억을 감액하자는 감액의견이 있고요.

부대의견은 기재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산업은행출자 사업비를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한  
다는 부대의견을 내면서 또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4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정부 원안을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아까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대규모 인프라와 관련된 내  
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정 부분 대기업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  
문에 만약에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하라고 그러면 이 사업이 아마 집행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또 이것을 하다 보면 그 이후에 전반적인 생태계가 같이 육  
성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러니까 부대의견도 아니고 예산 원안대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정일영 7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번부터 기후대응기금 26번까지 다 증액입니다. 증액사업인데  
우리 소위에서 증액사업을 일일이 다 논의하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사안만 논  
의를 하시고 나머지 사업은 예결위에 그냥 맡기는 게 어떨지, 이것을 일일이…… 사실  
사업 내용도 뒤로 갈수록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없어 가  
지고요. 그래서……

○소위원장 정일영 7번부터 몇 번까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6번까지입니다. 20개 사업입니다.

전부 다 증액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소위원장 정일영 우리 수석님이 그래도 많이 아시던데요?

○박홍근 위원 물론 우리가 심사하기에 준비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부분들은 해당 위원들이 여기 말고 예결위에도 다 서면질의라도 넣어 놓은 사안인 건가요? 그건 다 하게끔 돼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것은……

○소위원장 정일영 서면질의도 우리가 넘기면 예결위에서는 보니까, 어쨌든 증액으로.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말씀은 증액을 우리가 안 해도 거기서 심사를 다시 할 테니 굳이 여기서 심사하지 말자는 것은 반영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장 정일영 반영하지 말자고? 반영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박홍근 위원 다 증액을 했다는 얘기이니까, 증액하려면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 건데 전문성이 떨어지니 예결위……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여기서는 다 빼 버리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결위의 부별심사가 있으니까 사실 예결위에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빠진 게 있으면 여기서 심사하도록 하고 예결위에 있으면……

○소위원장 정일영 내가 거꾸로 알아들었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이것을 일일이 하시려면 사실 시간이 걸리고……

○박성훈 위원 아니,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위원님들 관심이 있는 증액사업만 여기서 해 가지고 넘기자는 거지요. 나머지 빠져 있는 부분들은 예결위에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 있는 사항은 논의를 하되 그런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사실 일일이 하기가, 나중에 보면 F-가스니 사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어려운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제안하시는 것……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작년에도 내가 예결위 소위에 있었지만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청한 경우하고 안 한 경우가 다르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다 삭감으로, 반영 안 하는 걸로 예결위로…… 그러니까 예결위로 안 넘어가는 거지, 아예. 그러면 예결위로 서면질의라도 들어가야 심사가 되는데……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다 해 보셨지만 예결위 소위 심사 책자에는 상임위 의결 증액이나 아니면 예결위원 개별 위원들의 증액 요구냐 이게 다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데, 책자에는 그냥 상임위 증액 요구냐 아니면 예결위원 개별위원의 증액 요구냐 이렇게 똑같이 심사자료에는 올라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국회의 예산심사 시스템이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한 걸 예결위 소위에서 안 본다는 것이고 예결위원들의 증액 요구도 실제로는 소위에서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논의하는 것이 사실은 무의미한 게 있어서 저도 지금 전문성을 떠나 가지고 이 시스템의 한계가 명백해서 참 뭐라고 말하기가……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데 작년에 소위에서는 상임위 증액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봤어

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비중 있게. 그리고 일반 위원, 예결위원들 증액 건에 대해서도 보긴 봤는데 일단은 상임위 의견을 조금 더 봤지.

○박성훈 위원 그래서 위원님 관심 있는 사업 증액은 여기서 보고 나머지는 넘기는 것으로……

○소위원장 정일영 넘겨요? 넘기는 게 우리 여기서는 뺀다는 소리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원안으로 넘긴다는 애기지요, 원안으로.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면 여기서 빼는 것으로 하고 말씀 있으시면 조금 보는 것으로 하고.

7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번 탄소중립 설비투자지원 사업입니다.

부산……

○소위원장 정일영 일일이 수석님이 얘기 안 하시고 눈으로 보고……

○박성훈 위원 이것은 저희 부산에 20억 요청하는 사업이니까요.

○소위원장 정일영 예?

○박성훈 위원 부산에서 요청하는 사업이고……

○소위원장 정일영 넣어요?

○박성훈 위원 예, 넣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 안 넣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다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뭘 뺄 수가 있겠어, 문제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그러시면,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저희 정부 측에서 조금 수용 곤란한 증액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그래요. 거꾸로 그렇게……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정일영 국장님이 순서대로 해 가지고,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예결위에서 다시 커트되고 정리되니까.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7번.

이건이 없으면 빠른 속도로 갈 테니까……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7번 수용입니다.

8번 수용입니다.

9번은 저희가 일부 수용입니다.

9번이 진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이게 지금 증액 규모가 56억 정도인데요. 지금 집행하는 부처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면 집행이 어렵다 이런 의견이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어느 정도?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25억 9600만 원 정도로 조정을 해 주시면……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하시지요, 25억 9600만 원.

그다음.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10번입니다. 10번도 저희가 일부 수용입니다.

이것도 증액 규모가 너무 많아서, 지금 제기하시는 게 140억 증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 합쳐서 102억 정도로만 조정을 해 주시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하시지요.

11번.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방금 전에 저희가 102억 말씀드린 게 있는데 국고보조율을 올려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60%, 70% 그것은 저희가 반영이 어렵고 60% 유지해서 102억 증액으로 요청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그다음에 11번부터 16번까지는 전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몇 번까지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16번까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17번.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17번은 일부 수용입니다.

저희가 요청은 8억인데요. 이게 1차 연도 신규 사업이라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5억 원 정도 증액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18번.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18번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어느 것을 수용하는 거야, 18번?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18번 수용입니다.

○김태년 위원 2개인데?

○소위원장 정일영 박홍근·김영환·정일영.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내역사업 둘 다……

○소위원장 정일영 큰 걸 해야 되겠구먼, 큰 것.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둘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둘 다, 다른 거구나.

○박홍근 위원 다른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좋습니다.

19번.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19번은 요청하는 부분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처에서 현재까지 블록체인이나 이런 신기술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부처에서 내년에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걸 빼고.

20번.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20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21번.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21번 수용이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22번.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22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23번.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23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24번.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24번도 수용이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둘 다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예.

25번이 저희가 수용 곤란입니다.

26번 사업도 마찬가지로인데 이게 R&D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25, 26이 둘 다 수용이 안 된다?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천재호 예, R&D 사업이라서 이게 사전 절차가 필요해 가지고 내년엔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관계없으시지요?

그러면 수용 안 하는 걸로.

그러면 정리 끝났습니다.

그러면 수석님, 100쪽.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00페이지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부예산 총괄 부분에서 16대 분야 체계로 예산안 배분 내역 설명이 필요하다는 관련 부대의견입니다. 기재부는 26년도 예산에 대해서 12대 분야를 통해 설명하고 있으나 12대 분야 합계는 737조 원으로 일치하지 않고 그다음에 결산은 16대 분야로 작성돼서 예산과 결산 간 비교·분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대의견입니다. 기재부는 12대 분야로 예산안 배분 내역을 설명하기보다는 국가의 공식 분류 체계인 16대 분야 체계로 내년도 예산안의 배분 내역을 설명한다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그 기본 취지에 동의하고요. 대안 문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부대의견안을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공식 예산 분류 체계인 16대 분야 체계를 포함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배분 내역을 설명한다 이렇게 주시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취지는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 왜 일치를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중복되는 게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예산관리과장 김동규 예산관리과장입니다.

R&D 사업 같은 경우에 각 소관 사업에 있는 R&D랑 과기부에 있는 R&D랑 중복 계상되는 게 있어 가지고 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국방비 같은 경우에도, 국방부 같은 경우에 16대 분야에서는 총지출로 들어가 있는데 12대 분야에는 일반회계 총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부대의견은 이렇게 달아도 괜찮아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없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건 검토해 왔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괜찮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그렇게 정리합시다.

2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국정과제 재정소요 규모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확정하면서 총 21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소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은 기재부는 123대 국정과제 재정소요액과 지원대책을 2026년 2월 임시회에 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정과제 관련 예산 소요는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내년 2월에 국회 보고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중기 재정지출 규모 내에 국정과제 예산을 충당하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부대의견은 채택 안 하는 걸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01페이지 K-뷰티 예산 부처 간 조정기능 강화 필요하다는 항목입니다.

K-뷰티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 육성 산업의 하나로 지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비효율·중복이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기재부는 K-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 부처를 명확히 설정하고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며 제조·유통·브랜드사 각 주체별 지원방안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4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4번은 서면질의 중에서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닌 타 위원회 소관 예산 사업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반 인건비는 대법원 이렇게 죽 6개 사업인 타 위원회 소관 사업이 저희 위원회에 서면질의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 아니할 건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 것을 논의를 왜……

○박성훈 위원 왜 하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해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박홍근 위원 심의를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지요? 심의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전문위원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세입.

○전문위원 정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수입 부분입니다.

2025년도 추경을 통해서 국세수입 예측치가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발표 시 본예산 대비 기준으로 총수입·총지출 관련 기준 증가액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세입 증가율 계산 시 추경 이후 수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적용하라는 부대의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사실 현재 발표할 때 추경 기준과 본예산 기준을 국세수입 증가율에서 현재 제시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굳이 뭐…… 어렵겠다.

2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법인세입니다.

최근 거시경제 변화 추이나 세입예산 동향 등을 고려할 때 2026년도 전망을 올해 수준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2조 9803억 26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원래 내년도 세수 예측 추계를 끝까지 마지막으로 잘하기 위해서 11월 달까지 해서 그것을 세입예산에 반영할지를 이번에 제도 개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 마지막까지 짚어 보고 있고요. 현재 법인세 쪽으로 보면 오히려 늘어날 소지가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워낙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재추계하고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3번.

○전문위원 정지은 3번, 교통·에너지·환경세입니다.

최근 국세수입 등을 고려할 때 과다 책정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3조 원 수준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도 저희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정책하고 다 연계돼 있어 가지고요. 실제로 보면 전세를 좀 세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다 원복하는 걸로, 물가 부담이 좀 생기거든요.

○소위원장 정일영 원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정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좀 더 지켜보고 재추계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과 관세협력기구 출연금은 같은 취지의 부대의견안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서 국제기구 분담금이 매년 과소 편성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환율·대외여건에 대응하여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예산편성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취지는 정확하게 이해되는데, 환율이 바뀌면 해외에 줄 때 돈이 부족하지 않냐는 건데 예산안 전체의 기준환율을 딱 잡아 놓고 직전 3개월 평균 환율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분담금만 다른 환율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부대의견 없는 걸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전문위원 정지은 3번입니다.

조세개혁추진단 운영입니다.

새 정부에서 사업단의 정상적인 존속 운영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을 하였기에 직제를 폐지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조세개혁추진단은 내년 3월까지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액 삭감하게 되면 내년 3월까지 운영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3월인데요, 그냥 해야 되겠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그러면 다음이 뭐예요? 기재부 끝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일단 기재부 보류사업 외에는 끝났고요. 그다음에 청들은 오후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아직 안 왔어요? 누구 왔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에 청 넘어가기 전에 어저께 부대의견에 대해서 기재부랑 저희랑 같이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소위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그 부분만 먼저 결정을 하고……

○소위원장 정일영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저기 밖에 누가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데이터처는 와 있어요? 데이터처는?

그리고 기재부 것 좀 보류시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소위로 재검토를 넘겨주신 게 있는데 이 중에 같이 오전 중에 꼭 같이 봐야 되겠다, 없어요?

○박수영 위원 전부 상의하세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권한을 많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권한을 받아서 잡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부대의견……

○소위원장 정일영 부대의견? 부대의견이 그것 아니에요, 결국 그 소소위에서 하는 것? 뭐 심각한 게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좀 크리티컬(critical)한 게 기재부랑 수석전문위원실이랑 의견이 다른 부분은 소위에서 결정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것까지 다 넘겨주신다는 그 뜻이야, 보니까. 우리가 잘 알아서 하라고.

○박흥근 위원 두 분이 결정하기에 부담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털어 줘야 될 부담이?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세 번째 이것 하나만 하세요.

MOU에 관해서……

○소위원장 정일영 어떤 것?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세 번째 항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 심각하지 않아요.

16번 얘기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16번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국가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MOU 체결 계획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하자는 얘기고요.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은 중대한 부담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자의적인 해석이나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국가재정법에서 중대한 부담일 경우에 500억 원 이상 예타를 받는 거니까 중대한 부담의 기준을 500억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국회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보다 분명하게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는 걸로 수정하는 게 저희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괜찮은 것 같은데요.

○박흥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이 예측 가능하면 좋은데 또 어느 정도 MOU의 규모가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또 MOU들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여기 MOU의 체결 계획을 제출한다니까요, 체결 계획이 있는 것만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MOU 타결을 앞두고 체결할 계획을 제출한다는 거기 때문에……

○박성훈 위원 이것은 행정부가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게 본인들이 부처에

서 볼 때 500억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 제출을 하는 거고요.

○김태년 위원 정부가 수용하세요. 수석전문위원 말씀이 맞구먼.

○소위원장 정일영 잠깐만.

차관님, 여기 수정의견을 받으실 수 있지요?

○기획재정부개발금융총괄과장 박정현 기재부……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야, 가만히 있어 봐. 차관님하고 지금 대화 중이니까.

차관님!

○박성훈 위원 예상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가능한……

○박성훈 위원 부처가 예상이 안 되면……

○소위원장 정일영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가능해 보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받아요. 이 정도야 체결 계획을 하는 거니까.

○김태년 위원 오히려 이것 더 머리 안 아프게 해 주는 거구먼.

○박성훈 위원 도와주는 건데……

○소위원장 정일영 이 정도는 받아서 하시고.

○김태년 위원 중대한 부담 이래 놓으면 머리 아프잖아. 얼마가 중대한 부담인지……

○소위원장 정일영 이 나머지는 넘겨주니까 받고.

데이터처 공무원들 와서 기다리는데 밥 먹기 전에 끝내고 가서 일하는 게 낫지 않아요?

○김태년 위원 밥 먹기 전에 끝낸다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데이터처.

○박홍근 위원 잠깐만, 차관님 말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여기가 원화 기준으로 돼 있다는 게 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여기 500억 원이라는 것을 달러로 환산해서……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은 약칭 소소위에 넘겨주세요. 그 정도는 정리할게요.

○박홍근 위원 우리가 예타 기준 같은 게 좀 있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 기준은 있는데 이게 달러로 바뀌는데 나중에 환산했더니 500억이 넘었니 아니었니 충돌할 소지가 있으니 달러 베이스로 좀 바뀌 났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좋아요. 그것은 마이너한 거니까 취지만 살리면 되지.

데이터처가 많지 않잖아요. 자료 줘 보세요. 데이터처 몇 개나 돼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청이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데이터처만 지금 와 있는 거지요? 데이터처가 우선이라 그랬잖아.

○전문위원 정지은 예, 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데이터처 몇 페이지예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4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몇 개나 돼요?

○전문위원 정지은 지금 총 17개 항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적지는 않네.

데이터처 오라고 하세요.

(장내 정리)

다 들어오셨습니까?

효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데이터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통계생산 대행료(수입대체경비)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은 오류가 있어서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수입대체경비 수입 11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가통계정책추진 등 3개 세부사업에 계상된 해외자료 번역 예산이 목적 외 집행 또는 불용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 4483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이것은 저희가 일부 수용하고자 합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국가통계정책추진 사업에서 3900만 원 감액을 수용하는데 나머지 통계정책국 기본 경비나 경제동향 조사에 있는 각각 300만 원에 대한 번역료는 올해도 집행 계획이 있고 내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태년 위원 그래서 얼마?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3900만 원 감액을……

○소위원장 정일영 3900만 원 감액만 수용. 그렇게 받아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지원 등 8개 세부사업에 편성된 통계조사 답례품 예산이 2024년도 결산 예비심사 당시 관련 상품권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이 의결 되었음에도 해당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상품권 구매 예산 총 113억 78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저희 상품권 예산의 대부분인 97% 정도가 통계조사 답례품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조사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서 이를 감액하는 것은 조사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업에서 응답자 간담회라든지 국가통계관리 우수기관 시상 그리고 정부 혁신을 위한 그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또 나머지 금액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뭐 필요한 것 같은데 다만…… 차장님이신가?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예, 차장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상품권 그것 할 때 입찰을 해서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야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십시오.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예,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관리 절차가 좀 미흡했었는데 올해 지금 훈령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제정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투명하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원안대로.

3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통계정책추진 사업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품질진단 등 개선과제 이행률이 낮으므로 증액된 2억 2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통계 행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한국통계정보원과 수탁기관 재지정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부대의견안이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품질관리 예산의 증액을 감액하는 것은 저희가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품질관리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장기 미이행되고 있는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서 향후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히 수탁기관으로 재지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서 부대의견을 받는다는 거예요?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예, 부대의견은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부대의견은 수용 그리고 예산은 원안?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교육지원 사업 중 이러닝 콘텐츠는 다른 교육기관과 차별성이 부족하므로 실무와 연계된 특화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말씀 주신 대로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부대의견 받는다는 거지요?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예.

○소위원장 정일영 5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업 중 기획간행물 발간 사업의 대상 계층 선정과 기획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수용해서 앞으로 더욱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6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관리 사업은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장비 교체 예산 22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증액이네.

○박홍근 위원 위원님들 많이 냈네.

○소위원장 정일영 나도 냈네.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수용해서 앞으로 데이터 유출 등에……

○김태년 위원 수용해서?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앞으로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김태년 위원 데이터처가 일 좀 했네, 여러 의원실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박홍근 위원 나한테는 부탁을 안 했네.

(웃음소리)

○소위원장 정일영 다음에 많이 하세요.

40쪽, 7번.

○전문위원 정지은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지원 사업 중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예산 7억 2500만 원과 국가데이터 허브플랫폼 구축 ISP 수립 예산 10억 8000만 원을 각각 신규 내역사업으로 증액하는 한편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내역사업입니다—의 민간 데이터 입수 확대를 위한 예산 5억 6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의견 주신 대로 저희들이 새로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됨에 따라서 새로운 거버넌스도 구축하고 또 표준화된 허브플랫폼 구축과 민간 데이터 확충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수용.

8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통계작성의 내역사업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사업 중 가상자산 등 행정 자료 활용이 어려운 자산 통계의 한계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이 부분도 저희들 현재 자산에 대해서는 행정자료 활용에 한계가 있는데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예.

○소위원장 정일영 9번.

○전문위원 정지은 경제총조사 고용부담금 불용률이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4억 8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기간제 연령 분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간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다만 1개월 미만의 단기근로자들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3억 3200만 원 정도의 감액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하지요.

○박성훈 위원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들에 대한 부담액이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지요?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예, 그 정도 수준으로……

○소위원장 정일영 예, 10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행정지원 인력운영 사업은 사인분류사 기본급을 월 10만 원 인상하기 위해서 1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수용?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예, 저희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11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본부 인건비-총액인건비 내용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승격으로 고위공무원단 2명 등 인건비 11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필요하겠네.

12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국제노동기구 파견은 2025년 말 중단 예정임에도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파견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1억 62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통계 인식 제고 사업은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됨에 따라서 대국민 홍보 예산 등이 필요하므로 2억 57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14번.

○전문위원 정지은 청사시설관리 사업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명칭 변경에 따른 옥외간판, 도로 안내판 등 교체 예산 4억 7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15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승격에 따라서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6000만 원 신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박홍근 위원 하나 물어나 봅시다.

기획협력관으로 들어오니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일과 다른 어떤 업무가 새로로……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새로 저희 처에 주어진 임무가 부처 간 데이터 그리고 정부 데이터, 공공데이터나 민간데이터 그런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새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지금 데이터기획협력관에서……

○박홍근 위원 타 부처나 아니면 민간하고 그 조정 역할을 하는 기획국이다 이거예요?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번 조직 개편에서 국가데이터처가 제일 좋아진 것 같아.

차장님, 거기 계속 계셨던 분이예요?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예, 저는 그 통계정책국장으로 있다가 지난 월요일에 승진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축하합니다.

16번.

○전문위원 정지은 마지막입니다.

주요 통계조사의 불응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통계조사 대상에 대한 접근성 및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 대상별로 특화된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그러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가서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가데이터처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가데이터처차장 이명호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중 국가데이터처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정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은 과태료 수납액 증가 관련 사항입니다.

수납액 증가 동향 및 2026년도 수납 전망을 고려할 때 3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관세청차장 이종욱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이에요? 스타트가 좋아요.

그다음.

○전문위원 정지은 관세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사업 중 수출입물품 안전성 위반 우범업체 및 물품조사 사업은 증가하는 해외직구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의 소액물품 외에 일상생활에 밀접한 중·고가 물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분석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76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자봉인 운영관리 사업에서 우범 해상컨테이너 수입화물에 부착하는 보안장비의 기존 교체계획 유지를 위해서 1억 65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관세청차장 이종욱 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 가지고 잘하시면 좋지요.

48쪽.

○전문위원 정지은 2번, 특송화물 통관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특송통관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군산항 특송화물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통관장 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 9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관세청차장 이종욱 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입화물 검사지원은 화주가 부담하던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률을 100%로 유지하기 위해서 8억 6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관세청차장 이종욱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공항만 감시지원 사업입니다.

2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서 X-ray 동시구현시스템 등 첨단장비 도입 예산 15억 1100만 원 증액의견과 해상밀수 차단 등 내용연수 경과 노후 감시정 교체 비용으로 1척분인 14억 7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두 건 다.

○관세청차장 이종욱 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세탈루심사 사업입니다.

2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세 체납관리단 운영 사업은 관세 체납자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실태조사원 채용 등 관련 예산 15억 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관세청차장 이종욱 증액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 체납관리단은 처음 하는 거예요?

○관세청차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국세청하고……

○소위원장 정일영 국세청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지요?

○관세청차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6번.

○전문위원 정지은 이 건은 그러면……

○박홍근 위원 원안 유지가 있기 때문에 증액으로 수용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증액 수용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전문위원 정지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밀수단속 사업 3건의 수정의견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마약단속 국제공조 지원 사업은 마약출발국 세관 당국과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1억 52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신규 내역사업인 탐지견 인프라 구축 사업은 마약 반입 우범도가 높은 부산·울산세관에 탐지견 확대 배치를 위해 관련 예산 1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또한 마약범죄 수사 및 공조국 협력 강화를 위해서 전년 대비 감액된 34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관세청차장 이종욱 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3개 다?

○관세청차장 이종욱 예.

○소위원장 정일영 탐지견 오늘 경진대회 하지요?

○관세청차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몇 시예요?

○관세청차장 이종욱 오후부터 시작인데요.

○소위원장 정일영 저도 가야 되는데……

○관세청차장 이종욱 바쁘셔 가지고……

○박홍근 위원 어디서 해요?

○소위원장 정일영 영종도.

그것 좋은데, 중요한 건데.

7번이요.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세행정 정보관리 사업 중 AI 기반 관세행정 정보화 전략계획 ISP 수립을 위해서 신규 내역사업 소요액으로 4억 5100만 원 추가 증액을 하자는 의견과 ISP 수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향후 관세행정 시스템의 재구축 시점에 AI 설계가 통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므로 관련 예산 8억 36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관세청차장 이종욱 정부안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원안 유지? 원안이 좋습니까?

○관세청차장 이종욱 예. 저희들은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고요. 관세행정이 AI 활용에 가장 적합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서 증액은 필요 없어요?

○관세청차장 이종욱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원안 유지로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8번.

○전문위원 정지은 8번 2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마약 밀반입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서 지방세관에 밀리미터와 신변검색기 설치 등 첨단장비 도입 예산 57억 400만 원 증액의견과 실제 예정된 납입액보다 과다 편성된 소형 X-ray장비 임차료 2억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관세청차장 이종욱 밀의 두 번째 건에 대해서…… 위의 건은 수용이고요, 밀의 건도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관세청차장 이종욱 예.

○소위원장 정일영 이게 성격이 다른가 보지요?

○관세청차장 이종욱 저희들이 기준을 조금 잘못 산정한 게 있어 가지고요, 이것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증액은 증액대로 감액은 감액대로?

○관세청차장 이종욱 예.

○소위원장 정일영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9번입니다.

FTA 및 국제협력 사업 중 미 관세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서 원산지 사전심사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련 예산 10억 원을 신규 증

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관세청차장 이종욱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10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ODA)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추진 중인 탄자니아·튀니지 원산지 관리시스템 사업 추진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수원국과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자는 부대의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관세청차장 이종욱 예, 부대의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부대의견 수용.

11번.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지원(출연) 사업입니다.

미 관세정책에 따른 원산지 검증 강화 대응 수출기업 지원 예산 5억 8500만 원과 그리고 비특혜 원산지 원스톱 AI 원산지 판정 지원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5억 원으로 총 10억 8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관세청차장 이종욱 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시고, 12번.

○전문위원 정지은 마지막입니다.

관세행정 인력지원 사업 중 첫 번째는 내역사업인 청년인턴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예산 증액분 6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도 금액 제시 의견은 없지만 동일한 취지의 감액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대의견안은 동 사업에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과정 및 근무 여건 등 사업 전반을 개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관세청차장 이종욱 정부 측은 정부안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부대의견은요? 필요 없나? 부대의견 어떻게 해? 의미가 있는 것도 같은데.

○관세청차장 이종욱 부대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하고요, 예산은 원안.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12번 관세청……

○박성훈 위원 감액에 대한 거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예,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고.

○관세청차장 이종욱 청년인턴 사업은 채용은 다 됐는데요, 중간에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 그만두고 나서 다시 대체하는 과정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불용이 난 부분들은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잘해서 불용이 나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를 깔고요.

이 사업은 지금 저희 청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부락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박성훈 위원님, 대부분 증액이고요, 바쁘셔서…… 8번에 유상범, 이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액도 수용하는 걸로. 대부분은 증액 수용입니다.

그러면 관세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관세청차장 이종욱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중 관세청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은 국세청.

○국세청차장 이성진 국세청 차장 이성진입니다.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기획조정관 김지훈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국세청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과세 인프라를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과세 인프라 확충의 사업 필요성이 떨어지고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추가 제작도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성 평가 이후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예산 30억 400만 원을 제외한 일반수용비 2억 4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저희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일반수용비는 2억 40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전용카드 제작뿐만 아니라 안내문이나 리플릿, 가맹점 스티커 제작에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전용카드 발급 예산은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24년 결산심사할 때 지나치게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도록 주의를 받은 바가 있어서 이를 반영해서 26년에는 발급 건수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제작하고 있는 건수하고 거의 일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해야 되는 업종이나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홍보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 감안하셔서 가지고,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되는 납세자 가산세 부담도 생기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두 가지만 내가 간단하게 물을게요, 차장님.

우리가 신용카드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현금영수증으로 계산하는 거래가 몇 퍼센트나 돼요? 그것 궁금해서요. 많은가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기획조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6000억 정도 되고요. 실제로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쓰는 경우가 아까 차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십만 건 되는데 실제로 보면 20대, 30대, 40대 그런 분들이 실제로 실제 카드를 많이 갖고 계시고요. 신용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신용카드로도 발급이 되고 휴대폰으로 발급되고 전용카드로도 발급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소위원장 정일영 국장님, 내가 여쭙본 거는 전체, 우리가 거래를 하잖아요. 그중에 현금으로 하는 게 몇 퍼센트냐는 겁니다.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현금으로요?

○소위원장 정일영 지금 현금영수증 얘기니까 현금, 영수증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금 자체가……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글썽요, 저희들 추산으로는 거의 한 5% 미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마 연구기관별로 조금……

○소위원장 정일영 계속 줄고 있지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무발급 업종이 지금 거의 100개가 되고 사업자가 250만 명이 넘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데 이 돈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누구한테 쓰는 돈이에요? 사업자 또는 국민?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활성화는 주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자 사업자들에게 가서 그분들한테 의무발급 업종으로 됐으니깐 현금영수증 잘 발행하세요, 간담회도 해야 되고 스티커도 붙여야 되고 리플릿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

○소위원장 정일영 어떤 업종이에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주로, 최근에 귀금속 업종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귀금속?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예, 그런 업종이 많습니다. 주로 현금을 많이……

○소위원장 정일영 조폐공사도 현금으로 그냥 한다고 그때 지난번에도, 국감 때……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귀금속 업종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그런 데가 좀 많이……

○소위원장 정일영 거기는 무조건 영수증을 발행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그렇습니다.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매출하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안 받든 받든 상관없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데 뭐 활성화에 돈 쓸 필요가…… 의무인데, 안 하면 처벌하면

되지.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어쨌든 계속 사업자들에게 영세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안내도 실제로 현장 가서, 저희들 세무소 직원들이 가서 안내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알려 드려야, 왜냐 하면 이게 가산세가 큼니다, 발급을 안 하면.

○**소위원장 정일영** 저는 이상입니다.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세청차장 이성진** 제재를 받기 전에 미리 잘 안내를 해 드리는 게, 그래야 저희 마찰이 없고 최대한……

○**박홍근 위원** 저만 해도 몰랐어요. 1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의무발급으로……

○**박성훈 위원** 의무발급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현금영수증만을 위한 전용카드를 이렇게 많이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국세청에서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도 상당 부분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효과성 분석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발급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이 부분은 지난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아무런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액을 요청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국세청차장 이성진** 사실 이게 한 해에 1600만 원 정도 사용되는데, 전용카드라는 것이, 매년 23만 건 정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요구하는데 또 저희가 이제 그만 발급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발급을, 또 이걸 활용해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니까 특별히 사업성 평가를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박성훈 위원** 차장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추계치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과거에 발급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가 몇만 장이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지금 시중에서 통용이 되고 있고 기 보유량은 얼마이고 그런 거를 추정해 볼 때 내년에는 얼마가 더 필요하겠나 이런 근거치가 다 나와 있습니까?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그렇습니다. 차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23만 장 정도 매년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가 한 17만 장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까지, 매년 소요가 매년 23만 정도 나가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17만 장으로는 무조건 부족하게 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산이 돼서 최소한의 카드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국세청차장 이성진** 더 제작할 게 한 7만 장 정도 됩니다. 이게 당초보다 단가가 더 올라 가지고 10만 장이 아니라 7만 장 정도밖에, 지금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수요량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훈 위원** 차장님 말씀하신 7만 장의 수요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7만 장에 필요한 예산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7만 장 공급하기 160원을 해 보면 상당 부분 지금 편성된

예산보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그 부분이 단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원 정도, 209원 정도가 지금 한 장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박흥근 위원 그래서 여기 표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실제 7만 장을 계산하고 단가가 올라가서 16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시 한번 물어봐요.

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언제, 누가 쓴다고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이거는 신청하면 쓰는데요.

○소위원장 정일영 누가?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보통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저희들이……

○소위원장 정일영 신청하면?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예. 그런데 보통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분들이 20대, 30대, 40대가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신용카드 갖고 있는 분들은 또 하나 카드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현금……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여기에 적립을, 돈을 넣어 놓는 거예요, 이 카드에?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아닙니다. 적립하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개인납세국장님?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예,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e음카드처럼 넣어 놓는 거예요?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아닙니다. 현금으로 계산하고 나서 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그 카드를 대면 바로 발급이 되도록 돼 있는 시스템인데요. 보통 저희가 현금으로 계산하면 전화번호를 넣으라고 하거든요. 휴대폰 번호를 넣으라고 하는데 휴대폰 번호를 넣기 좀 꺼려 하는 분도 있고 휴대폰이 없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이 카드를 나눠 줘서 영수증을 받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카드를 가지고 간단하게 찍으면 바로 영수증이 발급이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어렵게……

전화번호 이런 거 안 넣고 이 카드에 적립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적립은 아니고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이 되는 겁니다. 가맹사업자가……

○소위원장 정일영 이거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되는데요?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의 효과성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다들 전화번호 넣어서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전용카드라는 것을 발급해서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전용카드를 활용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라는 거잖아요.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아니요. 저희가 받으라는 건 아니고……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

이잖아요.

○**김태년 위원** 전화번호를 안 넣어도 되잖아요.

○**소위원장 정일영** 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게 소비자분이 예식장,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 썼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내 전화번호나 그런 걸 넣기 싫어. 그런데 그 예식장은 발급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 카드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예, 전화번호를……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그게 소비자 그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기관, 예식장을 위한 카드네, 결국.

○**김태년 위원** 아니지요. 전화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그래야 받는데 전화번호 넣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수증은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 카드가 있으면 신용카드 넣듯이 그냥 쪽 발급되면……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영수증을 받으면 나중에 세금 거기서 경감 혜택이 없어지잖아요.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소비자의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나중에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고요.

○**김태년 위원** 똑같지요. 현금받지요, 소득공제.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전화번호를 안 넣는데?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개인 이력이 전화번호로 관리를 할지 카드로 관리할지 그게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개인이 현금영수증을 받는 건데……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개인이 현금으로 100만 원 썼다는 건 그거를 숨기고 싶은 사람이 전화번호를 안 넣을 거 아니야, 보통은. 그런데 이 카드를……

○**김태년 위원** 귀찮아서 안 넣기도 해요.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게 더 귀찮지.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전화번호 노출을……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납세자 중심으로 놓고 보면, 납세자나 소비자 중심으로 놓고 보면 선택지를 다양화시켜 준다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의무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꼭 발행을 해야 되는 건데……

○**소위원장 정일영** 의무가입자는 그렇고.

○**김태년 위원** 의무가입자는 발행을 해야 되는……

○**소위원장 정일영**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화번호만 알려 주면 끝나는 걸 굳이 카드를……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선택지를 넓혀 준다고. 선택지를 넓혀 주는 것은 그건 대국민 서비스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에요.

○**소위원장 정일영** 김태년 위원님이 굉장히 서포트해 주네.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저희가 지금도 발급 건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많아요?

○**박홍근 위원** 생각보다 많아요, 23만 건이면.

○**소위원장 정일영** 23만?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예.

○김태년 위원 나는 이 카드 있는 줄 몰랐거든요. 나는 이 카드 하나 발급해야 되겠네요.

○소위원장 정일영 뭐 하시게요?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편리하십니다.

○김태년 위원 쓰게.

○박홍근 위원 그런데 실제 저런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회사의 비용을 가지고 여러 직원들이 물건을 사거나 썼을 때 그걸 일일이 누구의 핸드폰으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하나의 카드에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나중에 그게 정산할 때 편리함이 있지 않겠어요?

○김태년 위원 회사는 다 카드로 하지.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회사에서도 현금을 쓸 경우에 지금……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데 이 경우도, 그렇게 될 경우도 이 카드를 누구 이름으로 하나는 문제가 나오니까.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회사 같은 경우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되면 카드가 없어도 법인 이름으로 영수증 받으면 되잖아요.

○박성훈 위원 그래서 사업 효과성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빨리 이야기를 해 봐요, 얼른. 설득력 있게.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지금 사용 인원이, 카드로 발급받는 사용 인원이 22년에 71만 명, 23년에 58만 명인데 건수로 따지면 이게 한 100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 얘기는 매년 23만 건의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사용을 그만큼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고요. 매년 100만 건 가까이를 현금영수증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고 계시고……

○소위원장 정일영 국장님, 박성훈 위원님이랑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평범하게…… 왜 그 카드를 귀찮게, 신용카드도 가지고 다니기 귀찮은데 이 카드까지 여기다 넣고 다녀야 되느냐 이거지, 무슨 이득이 있길래 국민 입장에서.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김태년 위원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하여.

○소위원장 정일영 전화번호 알려 주면 간편하게, 더 간편하게……

○김태년 위원 전화번호를 안 알려 주고 싶은 국민도 있고……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데 카드 속에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개인 이력이 들어가 있구먼요.

○김태년 위원 그런데 그것은 가입자가 못 보잖아요. 노출이 안 되잖아요.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노출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노출이……

○김태년 위원 전화번호는 그 가입자한테 노출이 되잖아, 불러 주니까 사업자한테.

○소위원장 정일영 김태년 위원님이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시네. 한 10%의 설득력 밖에 안 되지만.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노출이 안 되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업자

분들은 평균 한 두 장 정도를 발급을 받아 가십니다. 그래서 사업자분들은 직원 하나씩 나누어 줘서 만약에 현금 결제할 때는 이것으로 영수증을……

○소위원장 정일영 사업자들이?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예, 영수증을 발급받아라 하고……

지금 사업자 발급분이 조금 더 많고요. 사용분도 사업자분들이……

○소위원장 정일영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 직원들한테 나누어 줘서 이런저런 걸 구매할 때, 쓸 때…… 그것은 일리가 있네.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청소년 일부 있고 고령층 좀 있고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 노출을 꺼리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겠네. 영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식당 조그마한 것 한 다 이런 사람들은 현금거래도 많이들 하잖아요.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 사람들은 이 카드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고……

○박성훈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직원이 결국 전화번호 넣어 가지고 발급받는 거랑……

○김태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기 게 되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개인 게 되니까?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아니라 회사나 사업주 번호로 넣어서 발급받는 거랑 차이가 뭐가 있지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태우려면 이게 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된 편익이 어떻게 실제로 사업주가 되든 이용자가 되든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뭘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소위원장 정일영 시원하게 설명을 못 하시네요.

○김태년 위원 나는 설득력이, 설득이 됐구먼.

○박홍근 위원 저는 설명은 됐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사업장의 경우도 그럴 수가 있고 예를 들어 부모님들…… 아이들이 따로 자기들이 현금을 쓸 일들이라고 하는 게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현금을 주고 물건 사오면서, 그런데 그게 부모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카드가 발급돼 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부모님 것으로 영수증을 받을, 당연히 왜냐하면 소득공제를 나중에 받으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김태년 위원 그렇지.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해 줘야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지, 그렇지. 사례를 1, 2, 3 해 가지고 한 서너 개를 탁 들어 주면 퍼뜩 이해가 되겠구먼요. 위원님들이, 박홍근 위원님이랑 김태년 위원님이 훨씬 더 설명을 잘하셔요.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산 중에 일부를 홍보 요원으로……

○박홍근 위원 많지 않은 예산인데 그런데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 단가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리고 10만 장이 아니라 7만 장이니까 올해 예산보다는 조금 더 줄이는

거네요. 8만 장에서 오히려 1만 장을 줄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동의를 해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의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박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원안대로지요, 원안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사에게 그 운영비 및 중계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25년 3분기까지 대리납부 실적이 산출된 상황이며 연 환산 시 약 1156억 원이므로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작년 실적이 아니라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올해 3분기 실적을 반영해서 예산안을 재산출할 경우에 7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저희는 감액을 일부 수용하더라도 이중으로 감액되는 부분은 제외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액 산식을 보시면 24년 대리납부 실적을 기초로 해서 산정했었는데 수용안이나 검토안을 보면 25년 실적으로, 즉 떨어진 실적을 기초로 해서 산정을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실적 감소 추정액으로 해서 48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은 이것은 이중으로 감액되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감액에서 제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서 얼마예요, 그러면 4800만 원을 제외하고?

○국세청차장 이성진 그러면 2300만 원 감액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박성훈 위원 7100만 원이 아니고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 정도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3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조사활동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세무조사 실시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년도에는 금융거래정보 전산조회 이용수수료를 위한 예산으로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24년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프로그램이 개통되거나 개통 예정인 은행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 건수는 24년도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24년도 실적 3700만 원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국세청차장 이성진 저희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26년 예산안에 이미 과거 집행률을 고려해서 한 30%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24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24년 11월 달에 우체국하고 기업은행에서 전산조회 프로그램이 추가로 개통돼서 수요가 더 늘고 있습니다.

금융 조치는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때 꼭 실시해야 하는 그런 업무이니까 이 점을 감안하셔서 줄이더라도 너무 많이 줄이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이게 가만히 있어 봐. 정부 측 입장이 그냥 원안이에요, 줄여달라는 얘기에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6000만 원으로 줄였으니까 그만 줄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얼마요?

○김태년 위원 아니, 원안 유지해 달라는 얘기에요.

○소위원장 정일영 아, 줄였으니까?

○김태년 위원 예, 원안에서 줄여 갖고 왔으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30% 감액해서 줄였으니까?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국세청 용어로 자진 납세했으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아, 그러면 받아 줘야 되겠네요.

○박성훈 위원 이게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이렇게 예산편성을……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니까 원래 8500 예산이 있는데 실제 24년 집행액을 보더라도 3700밖에 안 되니까 6000만 원으로 줄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성훈 위원 저도 동일한 게 2022년만 보더라도 7%, 29.4%, 43.5%…… 이 정도 사업이면 실은 기재부가 예산심의하면 이것 다 날려야 되는 사업이에요,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으로서.

○국세청차장 이성진 그런데 이게 22년에는 12만 건 사용했는데 23년에는 50만 건, 24년에는 74만 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점…… 이게 이용해 보니까 편리하고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략 한 5000만 원 정도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이런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는 한 60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게 세무조사할 때 금융거래정보 조회 수수료예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차장님, 여기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24년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프로그램이 개통되거나 개통 예정인 은행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이용 건수

가……

○국세청차장 이성진 아니, 사실은 24년 11월 달에 우체국하고 기업은행에서 추가로 개통을 했습니다.

○박성훈 위원 작년 11월예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김태년 위원 그러면 됐네요. 원안.

○소위원장 정일영 4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납부고지서 등 발송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고지서·독촉장 등의 발송요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과세유형전환 업무조정 예산은 업무 이관에 따라 절감되는 할인을 3.5%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5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국세청차장 이성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다음에 6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모바일 안내문 발송의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해 발송 방식이 변경되면서 평균 발송 단가가 낮아졌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25년도 평균 발송 비용 및 건수를 적용해서 5억 9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국세청차장 이성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8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 8페이지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전자고지·납부 서비스가 도입되었음에도 우편 발송 건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 기대했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지 못한 지적에 따라서 우편발송요금 25억 57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전자고지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저희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납부고지서 발송 예산은 국세 징수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납부고지서 같은 것들을 발송하기 위한 예산이라서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세수나 채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송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이·전용을 해서라도 꼭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런 점 먼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이것을 깎아 가지고 우편 발송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발송 못 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책임져요?

○소위원장 정일영 저도 모바일 통보하는 것보다 우편으로 와야 보기가 좋더라고요. 안 잊어 먹고.

그러면 이것은 인정하지요, 원안대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원안대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대의견……

○박홍근 위원 이것 좀 여쭙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전자고지 서비스와 우편 고지가 동시에 가는 겁니까? 하나만 가는 겁니까?

○국세청차장 이성진 하나만……

○박성훈 위원 여기 증감액 연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삭감하고 어디 증액을……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홍보 예산에 증액하자는 겁니다.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 대신 홍보 예산으로 하자는 의견인데요.

○박홍근 위원 아니, 결국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받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편이 사실은 아직도 관행적이지만, 그래도 이게 더 뭔가 공신력, 무게감 이런 게 좀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편리성은 당연히 전자인데 이것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확인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점차 바뀌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초기에는 2개를 다 하다가 점차 우편을 줄이고 전자로만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지 계속 2개로만 하는…… 지금 하나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세청정보화관리관 양철호 저희 전자고지 신청을 받아서 전자고지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전자고지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전자고지만 보내도록……

○박홍근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만 그렇게 한다?

○국세청정보화관리관 양철호 예, 신청하신 분만.

○김태년 위원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국세청정보화관리관 양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전자고지든 우편 발송이든.

○국세청정보화관리관 양철호 예, 그렇습니다.

○국세청차장 이성진 그런데 전자고지가 훨씬 비용이 적게 드니까 전자고지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소위원장 정일영 전자고지가 문자로 오는 것 아니에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데 문자는 수없이 오니까 안 보게 되고 까먹고 그냥 그렇더라고. 우편으로 오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게, 내 입장에서……

○국세청정보화관리관 양철호 그래서 아마 신청률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12%, 10% 정도 내외인데……

○소위원장 정일영 부대의견.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 밑의 부대의견입니다.

국세청은 전자고지 사업에 대한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전자고지를 활성화하여 우편 발송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대의견입니다.

○국세청차장 이성진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9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6년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 중 감사관실 기본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 6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한 감사관실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함에도 국세청은 사전 예방 대책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감사관실 기본경비 예산안 1억 중 20%인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환하여 편성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저희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따로 또 예산이 있으니까, 연구용역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관실 운영비를 이렇게 줄이게 되면 감사관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 사무실 운영경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4년도에 한 30% 깎았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 더 깎으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전관예우하고 감사관실 운영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바로? 관련 있나?

○박홍근 위원 감사관실이 제대로 못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소위원장 정일영 혼내 준다 그런 거예요?

○박홍근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전관예우 어쨌든 이것은 좀 철저히 하시고, 전관예우 방지. 그렇지요?

○박홍근 위원 그것을 부대의견을 달든지, 여기다 달아야 할지 다른 데다 달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실제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이게 계속 지적되어 온 사항이잖아요.

○소위원장 정일영 예산은 원안대로 하고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부대의견을 첨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잘 이행할 것.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압류재산 공매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은 국세 체납관리단 조직을 설치·운영하여 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지적 사항은 국세청은 이미 기존 조직을 통해 체납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체납관리단이 실태조사를 수행하여도 실제 징수효과는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사업은 국세징수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했으나 관련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 채용과 조직 운영비를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신규 예산편성된 125억 4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저희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일단 이 국세 체납단이 실효성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9월 달에 시범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한 징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략 2주 동안 68명의 신규 직원을 활용해서 한 4000여 명의 체납자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방문해서 설명하는 정도로도 현금 납부라든지 또는 분할납부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체납정리 전담 직원들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획·분석이라든지 현장 고액 체납자들 중심으로 체납정리를 더 집중하게 된다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들을 감안하시면 이 부분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국세징수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편성되었다, 아직 개정 전인데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국세 체납정리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체납이 매년 한 20조 원씩 발생해서 반 정도만 정리되고 나머지 반은 계속 누적돼서 24년 말 기준으로 11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체납액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한다면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또 조세 정의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체납정리가 사실 국세청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해야 하는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쌓이는 체납액을 해결하는 돌파구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일인 만큼 다소 부족한 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차장님, 두 가지만.

하나는 설명할 때 국세징수법 개정 전제로 그것 관련해서 명쾌하게, 국세징수법 개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해요? 전제가 돼야 돼요? 그 부분을 얼버무리신 것 같이……

○박성훈 위원 당연히 필요하지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필요합니다.

○박성훈 위원 조직을 만드는 거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조직을 만드는 데?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소위원장 정일영 이게 조직 만든다는 데 무슨 국세징수법……

○박홍근 위원 이게 한시 조직이 아니에요?

○소위원장 정일영 잠깐만요. 국세청 조직에 관련되는 거지 국세징수법에 관련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국 단위 비슷하게 단 내 조직인데 이걸 예를 들어 청장이 하거나 아니면 기재부장관 부총리의 그것을 받아서 하든지 내부의 직제 임시 조직으로 그것을 행안부 협조를 받든지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국세징수법 개정을 필요로 한대요?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민간인이 조사를 할 때……

○소위원장 정일영 잠깐만요.

차장님!

○**국세청차장 이성진**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국민의 국세를 징수 한다는 것이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그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당연히 반영되어 있어야……

○**소위원장 정일영** 차장님, 미안한데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수석님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민간인이 일부 여기에 조인하나 보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민간인한테 이것을 부여하려면 민간인이 그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세청 직원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민간인이 하려고 하려면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항에 주차단속을 하는데 그것을 공항공사 직원이나 주차단속 회사는 못 해.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만 가능하더라고. 똑같은 형태의 그러니까 이 체납관리단에 민간인들이 조인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군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체납관리단이 민간인을 채용해서 하겠다는 건데 결국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처분이 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데 그걸…… 잠깐만요.

차장님, 이어서 그런 경우에 공무원이 말하자면 과세, 이런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공권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서포트하는 그런 직무에 관해서는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권력 행사가 아니잖아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국세청차장 이성진** 여기서 어떤 과세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확인한다든지 체납을 이렇게 이렇게 납부하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든지 이런 사실행위, 안내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일단 가능하다고는 생각……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처분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것을 명확하게 청에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난번에 내가 그랬잖아. 국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민간이 할 수 있는 일,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 체납관리단에 공무원이 몇 명, 민간인이 몇 명, 민간인이 공무원을 서포트하는 역할 이런 경우에는 법 개정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조사에 들어가고 과세를 하는 처분을 민간인이 하게 되면 법 개정해야 되지요.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결국 실태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고 민간인이 그런 법적인 근거 없이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세청차장 이성진** 법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처분에 이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년 위원** 9월에 시범 사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직접 징수는 아니지만 비용 대비 효과, 징수 금액 어느 정도 돼요? 들어간 비용하고.

○**국세청차장 이성진** 일단 우리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비용은 들지 않았습  
니다. 그런데 적어도……

○**김태년 위원** 아까 다수 이랬거든요. 다수는 2건 이상이면 다수야.

○**국세청차장 이성진** 아마 그런 수준은 아니고 이거 한 4000여 명 중에서 대략 한 30% 정도는 분납 약속을 했adar든지 또는 현금 납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  
다.

○**김태년 위원** 4000명 중에서 30%면 1200명? 엄청나네.

○**박성훈 위원** 이것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지만 예산에 태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  
단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잠깐만, 차장님.

그래서 이 법 개정안 지금 내놨습니까?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정부안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조세소위에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보류했습니다.

○**행정실장 정상훈** 이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됐습니  
다.

○**소위원장 정일영** 어떤 문제 때문에?

○**행정실장 정상훈** 민간인이 개인정보……

○**소위원장 정일영** 아, 개인정보.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국세청징세법무국장 박해영** 제가 담당 징세법무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은 먼저 첫 번째, 전  
화 상담을 통해서 당시 체납자가 납부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일단 기본 사  
항들을 확인을 하고 납부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체납자의 주거지를 방  
문하는 내용입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제일 처음 하는 부분이 체납자의 기본 본  
인 확인을 거치고 그다음에 국세청 관련되어 있는 국세 체납 부분들이 해당되는 세목과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가 있는지 납부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납부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왜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  
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미안한데 관리단 전체의 구성 인원이 몇 명이에요?

○**국세청징세법무국장 박해영** 총 3년간 2000명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고 있고 26년  
첫 1개년 차에는 500명, 2개년 차에는 680명, 3개년 차에는 82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이게 3년 한시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국세청징세법무국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3년 한시 사업을 위해서 지금 그런 행정권한 행사 때문에 그다음에 입  
법 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고. 그런데 3년 동안 2000명을 하게 되면 지금 전

채 국세 체납자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산출해 본 겁니까?

○국세청징세법무국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러면 결국 문답 방식이지 실제 그 사람의 재산이냐 이런 것을 더 조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행사하는 것은 아니네요.

○국세청징세법무국장 박해영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국세공무원으로서 하게 되는 부분들은 사실 질문조사권과 자료제출권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행정행위의 공권력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민간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부분은 그 사람과 연락을 해서 만나고 그 체납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떤 강제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임의적으로 물어보는 상황은 있습니다. 왜 당신이, 그러니까 체납자가 얼마의 체납이 있는지 체납 사실을 알고 있는지 납부하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납부를 할 수 있는지 또 혹시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서 납부 유예……

○박홍근 위원 아까 설명이 있었으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 사업이 이번에 125억이고 3년에 걸쳐서 하면 그래도 한 5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국세청징세법무국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물론 이것을 통해서 체납된 것의 몇 조라도 걷을 수 있으면 저는 매우 성공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지난번에 광주에서 국감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저도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일단 법적인 측면이 의무적으로 동반돼야 한다는 것과 함께, 지금 말씀은 이와 함께 실제 이것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세청징세법무국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려면 그냥 단순히 실태조사라고 하는 게 문답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 기초해서 어떤 공권력이 행사돼 가지고 그래서 자산을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강제징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게 효과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금감원과 금융위의 관계가 그런 것인데 금감원은 민간 신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 중요한 은행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같이 나가서 어떤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말이에요, 금융위는 공무원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방법까지 같이 구상을 해야지 단순 문답 방식 실태조사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국세청징세법무국장 박해영 9월 달에 저희 국세공무원 신규 직원들이 실시를 한 내용으로도 259명이 3억 1000만 원을 실제 납부를 했고 그다음에 분납 약속을 통해 가지고 69억 원을 납부하겠다고 분납 약속을 했는데 10일 내에 실제로 분납이 약속이 이행된 부분이 10%에 해당하는 6.9조 원이 더 추가적으로 걷혔습니다. 그래서 실태 확인 부분과 안내를 함으로서만 통해서도 10억을 거두게 됐고 이 부분을 전체 체납자 부분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3년에 3278억 원 정도의, 직접적인 안내만으로 바로……

○박성훈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만으로도 3700억 원을 월수 징구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 그동안 국세청 공무원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안내만 해도 그렇게 구할 수 있었는데 그 돈을 징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세청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결국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만일에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제가 볼 때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시중에서 하고 있는 그런 추심, 독촉 이런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공무원도 아닌 사람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게 되는, 결국 강제 권한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의욕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작용을 저희가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국세청징세법무국장 박해영** 체납을 전체를 거두는 과정을 보면 안내를 하게 되고 안내로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실제로 주거지에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그다음 그 사람의 생활 실태를 잠복이나 탐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확인되는 부분에는 강제징수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구하게 되는데 실제……

○**소위원장 정일영** 잠깐, 제가 정리 좀 해 볼게요.

이제 다 파악은 된 것 같고요. 이게 국세청에서도 차장님도 국세징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몇 차례 말씀하셨고 이 체납관리단의 필요성은 다 알고 있고 확실히 필요한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상태에서 이 예산을 넣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방법은 저는 국세청에 이렇게 한번 좀 얘기해 주고 싶은데, 이것을 하려면…… 국세청 지금 정원이 얼마야, 2만 명이야, 얼마야?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2만 한 1000명 정도.

○**소위원장 정일영** 2만 1000명 되지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본부에만 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이 법 개정을, 여기 소위에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도 하고 국세청도, 정부도 추진해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함과 동시에 진짜 이 조직이 필요하다면 2만 명 중에 일시적으로 직원들을 500명이든 아까 얘기한 뭐 400명이든 그러면 지방청별로 뭐 그냥 한 50명씩 하든 30명씩 하든 뽑으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한 시적으로 한 3개월 하든 6개월 하든 청장이나 여러분들이 운영 계획을 짜서 운영하면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이렇게 해서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단지 안내만 했다고 해서 이렇게 세수가 들어왔던 것은 아니고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체납관리단의 업무라는 것이 현장에 찾아가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찾아가는 업무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무를 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주어진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체납관리단에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 강제징수 절차를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비용이 들어가서 체납 정리 효과가 훨씬 커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투입 대비 산출이 훨씬 많으면 운영해 볼 만한 제도잖아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거는 인정해요.

○**김태년 위원** 그런데 더 많다잖아요. 들어간 비용 대비 체납 정리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 아닙니까? 돈 더 많이 거둬들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영하게 해 줘 보지요.

○박성훈 위원 아니, 법적인 문제를……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그런데……

○김태년 위원 참, 법적인 문제는 어차피 예산 세워 봐도 법 통과 안 되면 이것 운영 못 할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잠깐 잠깐, 지금 차장님이, 국세청이 조금 설명을 명쾌하지 못하게……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고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여기까지는 공무원의 공권력이 필요한 것, 이 이상 그리고 그 전에는 공권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이것까지는 공권력이 필요하지 않고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여기를 일반 민간인들을 모집해서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명쾌하게 딱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흐리다가 조금 전에는 그래도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민간인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체납관리단에 민간인을 몇 명 채용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해,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필요해,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명쾌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김태년 위원 소소위에서 명쾌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소소위?

(웃음소리)

○박홍근 위원 하여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는 아까부터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소위원장께서는 기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국세청에서는 안내 정도야 문서나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화든지 아니면 현장 방문이든지 이것은 도저히 현재 인력으로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현재의 가용 인력이 이 사업을 그렇게 현장 방문해서 하기에는 불가하다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그 근거가 있다면 더 좋고.

하여튼 그래서 그거는 불가하다는 것을 얘기해서 별도로 이것을 전담하는 외부의 한시적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일인 것 같고. 제가 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인력과 예산을 썼을 때 훨씬 더 많은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은 이미 시범적으로 해 봤더니, 공무원을 투입해서 일단 한시적으로 소규모로 해 봤더니 그런 효과가 입증됐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건데.

여전히 남은 문제는 그러면 좋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3년에 걸쳐서 2000명까지 하는 건데 500억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법 문제가 남아 있으니 이 법 문제와 어떻게 연계할 거냐를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로서는. 그러니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는 인정하는데……

그런데 아까 남은 문제, 그러니까 이게 문답 방식의 현장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런 조사에 기반해서 일단은 강제적인 공권력 행사는 세무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연계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러나 그동안 현장 방문이 안 돼서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안 됐던 부분인데 이제는 기본 조사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 이제 입법 문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것 법 통과를 전제로 해서 해야 될 거냐, 민간인들이 위임받아서 하는 행위가 공권력 행사라고 본다고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입법이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신 거잖아요. 입법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박홍근 위원 그런 거지요. 그런 거라면 저는 사실은 이게 세무공무원 한 명당, 물론 한 명이 한 사람한테 가는 것을 설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갈 때는 그냥 조로 간다면 공무원 한 명에다가 두세 명을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사실은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는 것인데 그런데 꼭 입법적으로 그게 다 필요하다는 거라면 그러면 입법적인 것을 빨리 법안소위에서 의결을 해야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법안하고 예산 의결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예산이 빨리 통과가 됩니다, 법안은 더 늦게 통과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부대의견을 달고 이 예산을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렇게 전제가 될 경우에는 부대의견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수석 의견대로 하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데 이런 걸 왜 여기다 써 놔서, 무슨 뭐 불쾌해 가지고 주의 줬다며.

○박성훈 위원 원래 예산편성지침 보게 되면 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담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나요? 민간인들이 탐문하고 잠복하고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권한을 누가 개인에게 줍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북한에 있는 그런 활동도 아니고 민간인에게 잠복하고 탐문해 가지고 추심 독촉하는……

○국세청징세법무국장 박해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체납이 발생하고 나서 체납된 세금이 납부가 안 되는 경우에 저희 일반적인 세무공무원들이 체납 징수까지 하는 그 전체 절차를 말씀을 드린 거고, 잠복·탐문하는 부분은 생활 실태 확인을 기간제 근로자가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료가 세무공무원에게 넘어오면 그 자료를 토대로 국세공무원이 탐문·잠복하고 실제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해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결론을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이 지적 사항과 좀 다른 것은 여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법 개정을 전제로 했는데 그냥 예산을 편성까지 해 버렸고 그런데 안 썼기 때문에 이 지적을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에서 그동안 많이 해 봤지만 법 개정을 전제로 부대의견을 단다는 것, 부대의견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효력으로 전제를 달아 놓은 것이고

그게 만약에 법이 안 되면 쓰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대의견을 어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부대의견을 달고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법 개정이 안 되면 기존 공무원들을 좀 차출해 가지고 일단 운영을…… 이게 체납은 정리를 분명히 해야 돼요. 너무 액수가, 110조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 국세청이 의지를 갖고, 특히 고액 체납자들 반드시 다 발굴, 찾아내 가지고 과세하고 돈을 받아야 된다고, 세금을.

그러니까 세게 했는데 우리도 법 개정을 추진할게요. 열심히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 예산을 반영하는 데 부대의견을 달고 그런 것이 다 만약에 무슨 일 때문에 안 된다면 공무원들을 좀 해 가지고, 임시 운영했다며, 한시적으로 시범 케이스로. 그런 식으로 그거를 좀 확대해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예산이 좀 필요할 거고.

○박홍근 위원 하여튼 부대의견에 저는 동의를 하고. 다만 위원장님이나 박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거든요. 체납액을 납세자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어요’가 아니에요. 사실은 적극적 행정행위를 해야 될 일이었는데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세청의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을 쉽게, 그러니까 필요한 일인데 너무 이걸 쉽게 설계하지 마라, 그냥 빨리 외부 사람들 모아 가지고 돈 가지고 그 사람들 인력 채워서 그냥 내보내고 이렇게 쉽게 설계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좀 더, 물론 세무공무원들이 일도 많고 특히 그 기관에 따라서는 더 과도한 업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면 세무공무원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뭔가 현장에서 더 그동안 안 했던, 이게 힘든 일이니까 안 나가려고 할 텐데 그러지 말고 세무공무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해야지요. 그러면 외부 인력도 쓰면서도, 외부에 인력을 한시적으로 쓰는 것으로 해야 더 설득력 있고 효과도 있을 거다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굳이 두 단계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강제 징구 절차, 강제 절차도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설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상도 한번 해 보십시오.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소위원장 정일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앞으로 공직사회가 이렇게 인력도 다들 부족하고 일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지요.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다 아웃소싱 주고 민간인 모아 가지고 일 시키고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습니까? 정부 예산을 이렇게 쉽게 쉽게 써 가지고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민간인을 동원해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국세청이 그동안 이런 체납처분 이후에 과연 얼마나 징구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나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을 좀 단호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박성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국세청에서 2만 명이나 되

는 큰 조직인데 그동안 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소홀한 면이 꽤 있어요.

이것은 부대의견을 수석위원님, 좀 저기 해 가지고…… 우리 취지를 다 아시잖아.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법 통과돼서야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1페이지 상단 부분도 비슷한 취지라서, 11페이지 보시면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의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 전략 및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한다 이런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합해 가지고 부대의견을 만들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에 11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내년 시행될 경우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간제근로자 300명을 추가 채용할 예산 7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증액하는 걸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부대의견입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시 복지 연계 및 신변 안전 확보 등 민간 실태확인원 관리체계의 구체적 기준과 실효성 있는 교육·보완 대책을 마련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7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번,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는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거래 시세를 용역을 통해 조사하여 기준시가를 고시하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동 사업은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을 적용해서 예산액을 산출했는데 25년 예상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8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4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 중 자산취득비 6억 3800만 원은 세무서의 노후 의자 1824개를 단가 35만 원의 의자로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가 35만 원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단가를 28만 5830원으로 낮추고 이를 반영하면 1억 1700만 원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음이요.

9번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를 유인하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 안내·홍보·지급통지 등을 수행하는 복지세정 사업입니다.

자동신청제도 확산 추세 및 행정 효율화를 고려하여 일반수용비 중 기타수용비 위주로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저희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자동신청이라는 것이 납세자가 국세청에게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으면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하지 않도록 위임해 두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봤을 때 수급 가능성이 높아서 신청을 했다면 신청했다고 안내문을 보내 줘야 되고 또 신청하지 않았으면 신청하지 않았다고, 신청 제외했다고 안내를 또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내를 위한 수용비가 결코 줄어들 가능성 보다는 오히려 늘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물론 안내할 때 모바일 안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건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봐서 그냥 그대로 원안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한 가구가 이미 60%에 육박하기 때문에 나머지 40%에 대한 예산만 필요한 거 아닌가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그러니까 60% 자동신청을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다 신청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되었으면 국세청에서 봐서 수급 가능성이 높아서 신청하면 신청했다고 안내를 또 해 줘야 돼요, 납세자한테. 그리고 신청이 안 되었다고 하면, 수급 가능성이 낮아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신청 안 했다고, 신청 제외했다고 또 안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오히려 자동신청제도가 도입됐다 하더라도 안내는 줄지 않는다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예산은 중복, 낭비 아닌가요? 자동신청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동신청 동의를 한 가구에 동일한 내용으로 우편으로도 안내를 하고 이러면……

○국세청차장 이성진 그러니까 이것이 납세자가 신청하는 편의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청이 되었으면 꼭 알려 줘야 되는, 우리 과세관청의 일은 줄어드는 일이 아닙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좌우간 5억 원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까?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냥 넘어가시지요, 저렇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니.

○박성훈 위원 이것 설명을 좀 더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정일영 맞아요, 설명 좀 명확하게.

○박성훈 위원 저도 납세행정이나 또 납부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자료라도 좀 명확히 근거라도 제시를 하든지 이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설명하실 때 아까 자동신청제도 확산 추세 여기를 좀 확실하게 데이터 가지고 설명하면 좀 설득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보세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10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6페이지 상단입니다.

소송수행비용 내역사업인 변호사 수수료는 중요 심판·소송사건에 조세전문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대형 로펌들의 공격적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년도 예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13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른 의견도 없고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내역사업인 승소장려금은 승소 시 국세청 직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예산 부족으로 지급대상 금액 중 일부는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미지급 금액 3억 3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7페이지, 홈택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과세자료 제출,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을 통해 홈택스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시상담사와 임시상담사 기본급 3%를 인상하고 식비를 10만 원 인상하며 임시상담사의 경우 상시상담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급여를 조정하기 위해 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자

는 의견과 5억 1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어떤 것을?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냥 5억 1000만 원.

○소위원장 정일영 5억 1000만 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18페이지입니다.

상속·증여세 과세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부동산 등에 대해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증가에 따른 감정건수·세수효과·자발적 감정보율이 증가하고 있어 예산 증가에 따른 과세형평 제고 효과가 예상되므로 전년 대비 감소분 28억 78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세청차장 이성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9페이지, 역외탈세대응활동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역외탈세 혐의 정보의 수집·분석, 국가 간 정보 공조,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세무조사 지원 등 역외탈세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역외탈세를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반수용비·국외여비·특정업무경비들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고도화되는 글로벌 스캠 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역외탈세 조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액된 예산 중의 일부 7억 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0페이지 14번,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국세청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률은 25년 기준 10.6% 수준으로 저조합니다. AI 세정 실시 및 데이터의 연속성·안정성 등을 위하여 DR 체계 구축이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 이런 경우도 있네요.

○소위원장 정일영 이게 뭐예요? 신규 증액? 액수. 액수가 없어.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태호 위원님 서면질의인데요, 증액만 있고 액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런 경우는 뭐야?

○박흥근 위원 정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의견, 증액이 얼마 필요한 거야?

○국세청차장 이성진 일단 이게 구체적인 증액 금액이 나오려고 하면 ISP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ISP 예산을 우선 넣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국세청정보화관리관 양철호 아닙니다.

정보화국장입니다.

ISP는 지금 추진 중이고요. 12월 말에 나올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누구예요?

○국세청정보화관리관 양철호 정보화관리관입니다. 담당 국장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번 예산을 기재부에 신청을 했었어요?

○국세청정보화관리관 양철호 이번에는 저희가 ISP 하고 있어서 지금 못 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것 시작을 아예 안 했었네.

○국세청정보화관리관 양철호 지난번에 정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행안부에서 국가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 관련해서, 업무시스템에서 복구시스템을 다른 식으로…… 지금은 액티브-액티브라고 2개를 다 돌리는 시스템을 한번 시범 운영해 보고 그에 맞춰서 전체적인 정부예산을 맞춰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예산 신청을 하지 말라고 업무지침을 내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필요 없네요, 여기서는.

○국세청정보화관리관 양철호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아마…… 지금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다 복구가 된 다음에 아마 지금 행안부에서도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어떻게 DR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지를 부처에서 같이 찾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ISP를 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 필수율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하고 예산 부분도 ISP가 나오면 예산을 차츰 같이 태워 나갈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보겠구먼.

○국세청정보화관리관 양철호 같이 태워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 아이템만 가지고, 전 부처 관련된 애 모아 가지고.

○국세청정보화관리관 양철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5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0페이지 하단입니다.

국세부과포상금 고시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입니다.

국세청은 국세부과포상금에 대한 고시를 우선적으로 제정한 후 국세부과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세청차장 이성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16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1페이지, 실시간 소득과약제도 운영입니다.

부대의견안을 말씀드리면 실시간 소득과약제도는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기초이므로 국세청은 관련 예산을 실효성 있게 운용한다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기초이므로 관련 예산을……

정부 의견.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데 이게 뭐예요? 실시간 소득과약을 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동안 집행 실적이 좀 부진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27년부터 시행이 예정된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효과성 있게 집행하라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다른 거 없으시지요? 국세청 끝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해도 되겠지요?

○박홍근 위원 아까 보류가 있었지.

○김태년 위원 청장 오라고 해서 의결……

○박홍근 위원 아까 보류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아까 국세 체납관리단 부분에 있어서 부대의견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월요일 날 오전에 의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월요일 날 오전에 바빠요. 아까 기재부 것 소소위에 넘긴 것도 있고.

○김태년 위원 아니, 이건 그 전에 정리하실 거잖아요.

○소위원장 정일영 예, 하지요.

○김태년 위원 월요일은 이것만 하면 되고.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건 소소위 때 정리할 거라 월요일은 기재부 정리된 거랑 이것 정리된 거랑 같이……

○박홍근 위원 어차피 의결은 해야 되니까.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도 국세청 거 필요하다면서요, 체납관리단. 부대의견 붙이는 걸로 해서.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부대의견이 지금 없어.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지금은 이제……

○소위원장 정일영 부대의견을 우리한테 넘겨 주시고.

○김태년 위원 아, 오케이, 오케이. 위임, 위임.

○소위원장 정일영 부대의견 대충 다 공감……

○김태년 위원 위원장께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하면 되겠네.

○소위원장 정일영 공감대를 이뤘으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위임하는 걸로 하고 의결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서 가능한 의결을 해야 월요일 날 여러 가지……

○김태년 위원 문구상으로는 위원장께 위임하는 거고요, 내용적으로는 소소위에 위임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김태년 위원 청장 불러 가지고 의결해야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럴까요?

잠시 그러면……

○박홍근 위원 빨리하세요, 얼른.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국세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국세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마지막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아,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마지막에 산회하기 전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조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자료 22페이지, 조달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시설계약사업수입 항목입니다.

시설계약사업수입은 시설공사 및 기술용역 계약, 맞춤형 서비스, 총사업비 등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추가 공공주택 확대로 시설공사·기술용역 금액이 2.4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계약수수료 수입 49억 3400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세입예산안에 대한 증액의견.

정부 측이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조달청 차장 강성민입니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2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3페이지입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에 대한 사항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 등의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이 수납되는 세입과목입니다. 그리고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정부출연금 및 보조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등이 수납되는 세입과목입니다.

두 세입 과목은 지속적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 미계상되고 있으므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조달청차장 강성민 수용합니다. 예산편성 시에 세입 발생 여부를 예상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세입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서 최근 3년 평균 세입액을 기준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 4000만 원, 기타재산이자수입 1200만 원을 2026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이렇게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4페이지입니다.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은 해외조달기관 및 국가기구 등과의 국제 공공조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적 사항은 동 사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관련 성과지표나 실적이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성과에 대한 성과지표가 마련될 때까지 32억 99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수용 불가? 이유를 얘기해요, 이유를.

○김태년 위원 ‘수용 불가’ 그러면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죄송합니다.

○김태년 위원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지.

○소위원장 정일영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주의해서 잘 하세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죄송합니다.

현재도 내수시장이 포화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수출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조달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은 결국은 수출도 해외 정부조달 쪽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정부조달 성과 자체가 대개 바로 해외 정부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납품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간 벤더들, 현지 벤더들을 통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표가 이게 민간으로 나간 건지 정부로 나간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측면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성과지표를 예를 들면 국제기구 그다음에 UN 이런 성과지표를 추가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현재도 많은 기업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기업들의 한 50% 정도만 지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좀 증액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년 위원** 이거 확대해야 되는 사업 아니야?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서 증액해야 돼요, 증액.

그 밑에, 이거 내가 한 건데. 저 밑에 쪽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밑에까지 말씀을 드리면, 초기 진입장벽이 높은 해외조달 상황을 고려해서 초보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므로 해외조달시장 유망기업 집중 사업을 내역사업으로 15억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관련 플랫폼의 통합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K-조달 통합플랫폼 운영비 2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G-PASS 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제도에 대해서 G-PASS 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행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출장 경비 현실화 및 인건비 상승분 1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조달청은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과 G-PASS 기업 지정제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해외수출 실적 확대를 도모하고 해외조달시장 수출실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한다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종합해서 말씀하세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증액 및 부대의견에 대해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증액 및 부대의견 수용.

○**박성훈 위원** 증액이 어떤 증액……

○**김태년 위원** 3건.

○**박성훈 위원** 전부 다?

○**조달청차장 강성민** 예.

○**소위원장 정일영** 전부 다.

해외시장 중소기업 나가는 거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성훈 위원** 저는 증액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고요. 다만 부대의견에 이인선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성과지표나 실적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에 대해서 부대의견에 조금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다든지 뭔가 전향적인 어떤 문구가 포함되는 걸 전제로 해서 증액에 동의를 합니다.

○**조달청차장 강성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성과지표는 있는데요. 이인선 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지금은 해외수출로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그러면 해외 정부조달에 대한 건 얼마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으로 간 건지 최종 수요에 대해서 알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다만 아까 보조지표적으로 국제기구의 한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지표들을 통해서 성과관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왜 그게 파악이 안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이게 저희 검토보고 사항인데요. 검토보고에서는 그거를 관세청을 통해서 하면 파악이 안 되니까 지원 기업을 통해서 실적을 파악한 이후에 그걸 검증해서 해외조달시장 실적을 만들고 그 실적을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마련했습니

다.

○박성훈 위원 좋은 지적입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달청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진출한 기업들의 실적 이걸 파악하는 건데 그게 공공조달로 간 건지 민간으로 간 건지 이거는 조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박성훈 위원 그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달청차장 강성민 그런데 예를 들면 벤더를 통하게, 해외 벤더 그러니까 해외 바이어를 통하는데요. 이 해외 바이어한테서 그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해외 바이어가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어가……

○김태년 위원 최종 납품처를……

○조달청차장 강성민 알기가 어렵습니다.

○김태년 위원 공급처에서 모를 수 있다?

○조달청차장 강성민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변압기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걸 했는데 그거는 대부분 공공부문에 들어가니까 공공부문일 거다라고 아는데요. 예를 들면 문서세단기를 팔았는데, 예를 들면 호주에다 팔았는데 호주 바이어가 ‘아, 이거는 공공기관에 들어갔어’ 얘기해 줬으면 되는데 ‘아니야, 이거 영업비밀이야. 못 알려 줘’ 이러면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고, 다만 대부분의 저희들 업체들이 관급을 주로 하는 업체들이거든요. 관급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수는 관급으로 나갔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추를 하는 겁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외 공공조달 지원사업인데 해외 바이어를 통해 가지고 벤더를 통해 가지고 민간한테 수출하고 이거는 우리가 그 목적은 아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거는 중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거는 중기부, 그렇지.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해 버리면, 그걸 파악하기 힘들다고 해 버리면……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중기부 사업과의 차별성이 없어집니다.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기획조정관 이형식입니다.

위원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국제기구에 납품하고 주한 미군에 납품하고 파악 가능한 범위는 한 50%는 현재도 파악을 해서 국회에 매번 보고드리고 있고요. 다만 100% 완벽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할 때 일부 빠지는 부분이 실제 공공으로 납품이 됐는데 중간 바이어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저희가 캐치를 못 하는 실적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아까 수석님 말씀처럼 기업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크로스체크로 관세청의 통관내역이랑 비교를 해서 최대한 공공시장으로 납품한 거를 잡으려고 저희가 이번에 성과계획을 따로 보완해서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도 지적해 주셔서 가지고요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박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인선 위원님 지적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문구는 이렇게 만드시고요. 답아서 증액 부분 반영해서 그렇게 정리하시는 걸로 하지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부대의견으로 하고.

그래서 차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해서 박성훈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해서…… 조달청이 노력을 해서 그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트워크를 관리하면 됩니다, 내가 볼 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걸 보여 주시고……

○조달청차장 강성민 예,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부대의견에 넣도록 하고 그래서 통과시키는 걸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6페이지입니다.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비 중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비로 혁신제품 발굴 등을 통합지원하는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것으로 35억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중에 AI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 수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전담조직의 인력 구성으로는 AI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보이며 AI 공모전 등의 타 부처 사업과 중복을 감안해서 1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달청차장 강성민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AI 제품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저희 혁신제품에서도 점점 더 신청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제품 특성상 시장에 빨리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인력도 그렇고 평가위원들도 그렇고 별도의 AI 제품에 대한 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하려면 운영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지금 잡은 거고 팀장 1명에 팀원 3명 이렇게 해서 한 4명 정도로 운영을 하면 일단 최소한의 발판은 마련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필요하다 이 말씀이군요.

설명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년 위원님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데?

○김태년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에요?

○김태년 위원 아니, 저 의견이…… 말을 안 하면 동의한다고……

○소위원장 정일영 동의?

○김태년 위원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하단부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비 중 AI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은 사업 중복 여부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과 다음으로 정부의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계획에 따라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역할이 확대되므로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조달청차장 강성민 증액 및 부대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박홍근 위원 아니, 아까 그것을 감액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부대의견은 수용?

○조달청차장 강성민 예,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부대의견 중에서 보고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없어서 그냥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통과.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7페이지입니다.

동 사업 내역사업 중에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 지원 사업은 비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창고 임차, 경제안보품목 재고순환 관리 등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달청은 26년 예산안에서 경제안보품목 재고순환비용 3억 9800만 원을 증액하고 타 소비축 보관료 9억 6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보관료 편성으로 이미 그 목적이 상당 부분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순환비용을 별도로 증액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 불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고순환비용 증액분인 2억 9743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조달청차장 강성민 이것은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재고순환비용하고 보관료는 목적과 성격이 좀 상이합니다.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입출고와 관련된 비용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창고에 대한 면적이 또 자기네들이 그만큼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도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재고순환비용도 충분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거기다 임대료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 항목들을 실비 개념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 창고 재고…… 창고가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그러니까 이 사업에 참여한 제조업체들의 창고를 이용하게 됩니다.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저희 조달청 창고가 부족해 가지고요. 요소·활성탄·염화칼슘·형석, 4개 품목은 10개 기업, 제조하는 기업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현재 보관료를 저희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고순환비용도 저렴하게 주고 있어서 저희가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조금 했습니다. 이윤이나 이런 것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박성훈 위원 국장님, 지게차 운용비용하고 재고순환비용하고 이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재고순환비용이 지게차 운용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정액 단가라고 예산정책처에서 정리를 하셨는데……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저희가 재고순환을 할 때 기존에 창고에 있는 것을 지게차를 사용해서 꺼낸 다음에 그것을 판 다음에 새 물건…… 요소 같은 경우에 3개월 단위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유통기한이.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물건을 또 가지고 와서 지게차에 실어서 다시 창고 안에 집어넣고 해야 되는 그 지게차 비용이 가장 큰 비용……

○박성훈 위원 입출고 비용?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예, 입출고 비용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요. 이것은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8페이지입니다.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입니다.

동 사업은 공공혁신수요 및 국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혁신제품을 개발·고도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0억이 증가한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적 사항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3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시제품 제작, 국내외 판로 개척 등 구체적인 사업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7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자료를 제출하는 데 성과가 확실히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4년도 실적치를 제출하는데 저희가 공란으로 다 비워 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나왔고요.

이미 5개 과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성과가 있고 이게 또 다른 부처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개발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제품이 업그레이드되거나 수요하고 매칭이 됨으로써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좀……

○소위원장 정일영 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또 설명도 해 봐요. 뭐가 있으세요?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저희 수출 실적이라든지 국내 공공시장에 R&D 완성해서 납품한 실적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실수로 그것을 빠뜨려 가지고……

○박성훈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3배 이상 늘려 가지고 가져오는 게 맞나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지금 충분한 수요도 있고……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R&D 과제가 과기부나 산업부에서 통상적으로 공모를 하면 경쟁률이 보통 3 대 1 정도 평균 됩니다. 저희 과제가 1년에 7개 정도 과제를 수행하는데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억입니다. 내년엔 100억으로 3배 정도 느는데 저희는 경쟁률이 10 대 1이 넘습니다. 기업들이 관심이 아주 많고요.

많은 이유가 R&D 완성이 되면 저희가 후속으로 공공구매 판로를 열어 주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져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240개 과제는 R&D를 진행을 하지를 못하고 펜딩돼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셔서 한 3배 정도, 100억 정도 주시면 공공 수요가 있는 R&D를 저희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서 그 결과물을 공공 수요, 행정 서비스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차장님, 24년도 예산안이 얼마지요, 이 사업에 대한? 전년도나 전년 연도에.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24년도는 1억이 적었습니다. 29억에서 28억 정도 됐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 전에는요?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그 전에는 거의…… 그 전에는 최초가 저희가 4년 전이었는데요. 24억에서 시작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속해서 20억대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내년도에 이렇게 100억대로 3배 이상 돈을 늘릴 만한 그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신규 사업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 온 사업인데 매년 늘어 봐야 2억~3억씩 늘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억~3억 는 게 아니라 3배 이상 이렇게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니까 그런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명확한 어떤 자료가 필요한데 이것은 판로 확보를 한 내용이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3배 이상의 예산을 편성할 만한 어떤 명확한 이유나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아마 동일한 이런 사업 성과를 가지고 와서 저희 앞에서 예산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3배 이상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박홍근 위원 아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요?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저희가 21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요 22년도랑 23년도는 아까 나누어 드린 그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이 완료가 안 돼 가지고 수출이라든지 판로가 없었는데 올해 처음 7개 과제가 완료가 돼서 지금 나누어 드린 성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당초 경쟁률이 한 4 대 1 정도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홍보도 덜 돼 있기도 하고 예산도 저희가 24억,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한 4년 정도 하니까 지금 경쟁률도 한 10 대 1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기업들이 조달청 R&D 지원받아서 판로도 개척이 많이 되고 해서 신청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처음 올해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과기부에 설득을 해서 정부안에 담았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을 실제 못 했습니다, 그동안은.

○소위원장 정일영 이게 중소기업들이에요?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서 제품 만든 것들이에요, 혁신제품들?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저희가 80% 보조금을, R&D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건 중소기업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예.

○**조달청차장 강성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케일업형하고 시범구매연계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스케일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업체가 기술개발을 다 해 놓고 제품화를 하긴 한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조금 사용도가 달라진다고는 아니면서 수출처가 달라진다고는 그럴 경우에 다시 한번 스케일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비용들이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씩 들거든요. 이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줌으로써 빨리 개발되고 빨리 나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 다섯 번째에 있는 AI 글로벌 도로안전시설물 탐지 서비스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도로안전시설물들을 탐지하는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해외 도로, 그러니까 미국의 도로안전시설물들이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돈을 줌으로써 개발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들입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스케일업형 같은 경우는 중기부나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기타 부처들이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이유를 들어서 전년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예산을 증액을 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치 않은 부분인데, 금액에 대해서는 규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흥근 위원** 그러니까 가령 아까 말씀하시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가 한 4 대 1 정도였는데 지금 10 대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년 사이에 2.5배 정도가 지금 더 수요가 창출된 것 아니에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저희들도 납득이 되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거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딱 100억을 얘기를 하니까 그냥 단위에다가 맞춘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이 사업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과가 나니까 달리는 말에 우리가 더 주마가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근거를, 어느 적절한 수요 근거를 줘야 우리도 거기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보통 예산편성하는 기준이나 논리들이 있잖아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경쟁률하고 지금하고의 비율 차이를 적용을 해 가지고 그 기준으로 산출해 보면 예를 들어 70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근거가 나와 줘야지만 위원님들이 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예산을 넣을 수 있는데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성과가 올해, 내년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100억을 요청을 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예산편성의 기준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합리적이지 않은 요청인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데 이것 국장님이나 차장님, 어디 과기부? 어디 설득한 자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저희가 1차로 과기부를 일단 설득하고 2차는 기재부 예산실, 이 두 단계 거치는데요, R&D 예산은. 저희가 과기부 설득할 때 과기부 자체 R&D 경쟁률이 보통 삼 점 몇 대 1 정도, 3 대 1 정도 되는데 저희 과제는 10 대 1이 넘기 때문에 그 정도 경쟁률을 과기부 수준으로 하려면 사실 3 대 1도 엄청 높은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려면 저희가 100억 정도는 있어야 다른 부처, 중기부라든지 과기부 수준의 경쟁률을 해서 원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다른 부처 수준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100억을 신청한 거고요.

○박홍근 위원 예, 알겠어요. 좀 깎아 보세요.

차장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억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니 애초에 시작할 때가 아까 25억……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21억에서……

○박홍근 위원 24억에서 시작했다 했나요? 그러니까 한 25억에서 시작했다 치면 그때가 4 대 1이니까 한 10 대 1로 이렇게 서로 상계하면 한 75억 정도 되나요? 어느 정도……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5억 됩니다. 2.5배면……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75억 정도 되니까 25억 정도는 깎고 75억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래도 올해보다 한 사십 얼마가 더 늘어난 거니까, 한 45억 정도 늘어난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성과 가지고 늘려 나가고 그렇게 하시지요. 25억 깎고 75억으로 시작을 해 보시지요.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좀 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 그나마 찾은 근거가 아까 그 수요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위원님, 처음 시작한 게 23년도에 17억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4억이 아니고 17억에서 시작해서 조금 늘기는 늘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그런 얘기는 도움이 안 되고요.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아니, 틀린 수치라서 제가 정정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더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하려다가 참는데 대충 이 정도에서 마무리합시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5억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조달전문교육운영입니다.

조달전문교육운영은 조달업무의 전문화·다양화 및 조달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조달전문교육을 통해 수요기관·민간업체의 조달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조달전문교육 교육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위한 포상금 84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지침상 포상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법령에 관련 근거가 없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이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이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교육 운영상 좀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기관 사례를 보면 일반수용비로 집행되고 있어서 가능하시면 부대의견에 집행 시에 예산 비목을 일반수용비로 조정해서 집행하라고 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박홍근 위원 운영상 문제는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저희가 보기에는 포상금을 일반수용비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지침상 포상금 정의에 안 맞기 때문에……

○소위원장 정일영 검토보고서 520페이지에 다 써 놔구먼.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저희가 볼 때는 감액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지침상 안 맞는 것을 자꾸 예외로 인정하다 보면 저희가……

○김태년 위원 그러면 감액해요. 나머지는……

○박홍근 위원 보니까 다 증액 요구예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나머지는 금방……

○박성훈 위원 빨리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800만 원 감액으로……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 그냥 놔둬요. 놔두고 앞으로 이것 내년에 바꿔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아니, 그런데 포상금 원칙은 놔두면 안 되는데.

○소위원장 정일영 어떻게 해요? 잘라요?

○박성훈 위원 지침에 안 맞아요.

○김태년 위원 아니, 800만 원 감액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박성훈 위원 800만 원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문제없어요? 그래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이게 원래 가능하다고 그러면 사실 비목을 좀 바꿨으면 싶은데……

○김태년 위원 안 맞잖아. 그러니까 그냥 수용하고 넘어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0페이지입니다.

조달정보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나라장터를 보다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화재 등 재난 상황의 주 시스템 중단 시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DR 시스템 체계 마련이 필요하여 임차료 16억 5000만 원씩 3회분 반영하는 49억 5000만 원 증액안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 수용?

○조달청차장 강성민 예,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하단입니다.

민간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서 활용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ISP 용역비 3억 50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것도 정부, 수용?

○조달청차장 강성민 예, 수용.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1페이지 공급망 관련해서 국가비축자원 지능형 공급망관리 시스템 구축계획(ISP) 수립을 위해 용역비 8억 원 증액안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수용?

○조달청차장 강성민 예,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2페이지, 회전자금 관련된 부대의견입니다.

조달청은 회전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출금 규모의 적정성과 핵심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포함한 회전자금의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정부 측 부대의견.

○조달청차장 강성민 이 부분은 다른 예에 비추어서 문구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한다’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안을 보시면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 구매 목적인 혁신제품 상용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평가하여 시범 구매 사업의 정책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고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2026년 2월 임시회 시 기재위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달청차장 강성민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이제 마무리 다 해 놓았고……

잠깐 차장님, 구매국장 하다가 승진했지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구매국 예산 운용 50% 정도는 삭감하려다가 말았는데, 왜냐하면 구매국이 갑질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 가격을 갖다가 마음대로 막 내려라 올려라, 기업체 숫자 많다, 줄여라 이런 공무원이 해야 되지 않을 일을 하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한 50% 구매 공무원들 줄이는 게 맞다고 보더라도 개선안을 가져와서, 하여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예,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삭감해요.

○소위원장 정일영 할까요? 작년에 2조도 했는데…… 그것 진짜 이게 아까 얼마야……

○김태년 위원 그냥 하세요.

○소위원장 정일영 자, 그러면 다 됐지요?

조달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헌법……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뭐 있어요?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아까 R&D 연구개발 예산 저희가 좀 감액은 가능한데 75억 이면 너무 많이 감액이 돼 가지고……

○박홍근 위원 25억이라면서요.

○소위원장 정일영 25억을 하면 70억이 남는 건데?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5억 감액하고 75억이 남지요.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그러니까 25억 감액이……

○소위원장 정일영 70억이 남는 거야.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너무 적어서 저희 자료 보완해서 금방 다시 보고를 드릴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박홍근 위원 의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20억만 감액하세요.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저희가 너무 금액이……

○소위원장 정일영 아니, 청에서 자료를 좀 성의 있게 만들고…… 3배를 증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의 있는 설명과 자료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산에서 3배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10 대 1 경쟁률을 한다고 하나 10 대 1 경쟁률은 다른 데에 비해서 거기는 공공 혁신으로 해 가지고 구매를 해 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제도의 성격이 좋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거지 R&D 무조건 3배 높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 그것은 또 좀 다르잖아요.

○김태년 위원 이쪽 면에서 보면 75억도 증액을 엄청나게 한 거지.

○소위원장 정일영 차장님, 알겠습니까?

○조달청차장 강성민 그러면 80억으로라도 좀……

○소위원장 정일영 얼마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아니, 제가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제일 꼭 방어가 돼야 된다고 했던……

○박홍근 위원 제일 절실한 예산?

○조달청차장 강성민 예. 왜냐하면 제일 내년도 역점 사업이라……

○소위원장 정일영 그래서 얼마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원래는 사실 100억을 꼭 확보하라는 지침을 제가 받고 왔었는데……

○소위원장 정일영 우리가 이제 정리할게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정 여기서 감액이 어쩔 수 없다 그러시면 최소한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지금 박홍근 위원님이 잘해 주셔 가지고 25억 삭감으로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얼마 삭감을 해야 그래도 그 사업이 잘된다는 거예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그래도 저희는 한 3배 정도 해서 90억 정도 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대외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이나 이런 데 한 3배 증액 노력한다 이렇게 상당히 기업들이 기대이익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좀 있어서요. 한 10억 정도 저희가……

○박홍근 위원 2.5배도 반올림해서 3배예요.

○조달청차장 강성민 저희가 이 R&D 쪽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아까 박홍근 위원님 말씀대로 80억으로 하시지요.

○박홍근 위원 예, 그렇시다.

○소위원장 정일영 김태년 위원님, 80억?

○김태년 위원 예.

○박홍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80억으로 한번 해 보세요.

80억으로 정리를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 정도면 많이 늘어났지요.

○박홍근 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소위원장 정일영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조달청차장 강성민 예.

○소위원장 정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중 조달청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중에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날 9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김태년 박성훈 박홍근 정일영

○청가 위원(1인)

이인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미래전략국장 천재호

재정관리국장 박봉용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국유재산심의관 고종안

조세개혁추진단장 김건영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이용욱

국가데이터처

차장 이명호

국세청

차장 이성진

기획조정관 김지훈

정보화관리관 양철호

징세법무국장 박해영

개인납세국장 박종희

복지세정관리단장 김대원

관세청

차장 이종욱

기획조정관 한창령

조달청

차장 강성민

기획조정관 이형식